

헤이세이 19 년도 취학·수학 또는
진학·취직을 지원 하기 위한 원호제도 일람

교 토 부
교 토 부 교 육 위 원 회

목 차

처음.....	5
교토부원호제도담당기관일람.....	6

제 1 편 영·유아를 위한 제도

1 모자가정 장학금 제도 등.....	9
2 사립유치원 보육비경감 보조금.....	10
3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	11
4 유치원 입학장려 사업.....	12~13

제 2 편 초등학생을 위한 제도

1 취학원조 사업(보호 또는 준보호세대분).....	15
2 취학 장려금(특별지원학급아동분).....	16~17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조금.....	18
4 수학여행 원조금.....	19
5 모자가정 장학금 등.....	20
6 교통사고 유족 장학금 등.....	21
7 외국인학교 재학생에의 수학 보조금.....	22
8 모자복지 자금 대부금.....	23

제 3 편 중학생을 위한 제도

1 취학원조 사업 (보호 또는 준보호 세대분).....	25
2 취학 장려금 (특별지원학급 아동분).....	26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조금.....	27
4 수학여행 원조금.....	28
5 모자가정 장학금 등.....	29
6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	30
7 외국인학교 재학생에의 수학 보조금.....	31
8 모자복지 자금 대부금.....	32

제 4 편 중학교 졸업생을 위한 제도

1	기능취득자금, 입소 준비금.....	34~35
2	생활보호법에 의한 기능 취득비·취직 준비금.....	36
3	직업훈련 지원 제도.....	37
4	장애인 등 직업적응훈련 수당.....	38
5	모자복지 자금 대부금.....	39~40
6	기능자 육성 자금.....	41

제 5 편 고등학생, 고등전문학교 학생 등을 위한 제도

1	생활보호법에 의한 고등취학 보조금.....	46
2	부립고등학교 수업료 감면.....	47
3	고등학교 장학금(생활보호 세대 및 비과제 세대).....	48~49
4	교토부 내외의 사립고등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비경감 보조금.....	50
5	과다소밀지역등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통학비 보조금.....	51
6	모자가정 장학금 등.....	52~53
7	교통사고 유족생 장학금 등.....	54
8	사립고등전문학교생 장학 보조금.....	55
9	정시제 및 통신제과정 교과서 급여.....	56
10	정시제 및 통신제과정 수학 장려금.....	57
11	모자복지 자금 대부금.....	58~59
12	생활복지 자금 대부금(수학 자금).....	60
13	고등학생 등 수학지원 사업(수학금).....	61~62
14	고등학생 등 수학지원 사업(수학 준비금).....	63~64
15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	65

제 6 편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제도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취업 준비금.....	68
2	기능 취득 자금·입소 준비금.....	69~70
3	직업훈련 지원 제도.....	71
4	장애인 등 직장적응훈련 수당.....	72
5	기능자 육성 자금.....	73

6	모자복지 자금 대부금.....	74~75
7	생활복지 자금 대부금(수학자금).....	76
8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제 1 종).....	77~78
9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제 2 종).....	79~80

제 7 편 특별지원학교아동·학생을 위한 제도

1	취학 장려금.....	82~84
2	고등학생 등 수학지원 사업(수학금).....	85~86
3	고등학생 등 수학지원 사업(수학 준비금).....	87~88

※헤이세이 19 년 4 월부터 시각·청각·양호학교는, 학교의 종별에 의하여 특별지원 학교로 분류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아학급은 특별지원 학급으로 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머리말

인권존중이 국제적인 큰 흐름이 되고 있는 현재, 교토부에서도 동화문제 등 여러가지 인권문제의 해결을 향해, 한사람 한사람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더 배우고 싶다”,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에 가고 싶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이러한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 되어야 합니다.

교토부에서는 경제적 이유에 의한 취·수학, 기능취득이나 취업의 실패를 막기 위해 각종의 원호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이 제도는 일본국헌법 제 97 조에 “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다년간에 걸친 자유획득을 향한 노력의 성과”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선배들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희망하는 분은, 보호자나 학교의 선생님과 상담하여,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스스로의 장래를 향해 한 발 내딛는 것과 함께, 서로의 인권이 존중되어지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 ◆ 여기 명시되어 있는 여러 제도 외에, 교토시나 타 시(市)정 (町) 촌 (村) 에서도 독자적으로 실시 되고 있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 잘 모르시는 부분은, 시(市)정 (町) 촌 (村) 교육위원회나 시의 복지사무소, 구청의 복지담당창구, 또는 다음 페이지의 원호제도 담당기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 ◆ 시(市)정 (町) 촌 (村) 에 따라서는, 접수처가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 ◆ 각 항목의 내용은, 일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토부 원호제도 담당기관 일람

■교토부청

교육청지도부 학교교육과	075-414-5831	부(府)민노동부	능력개발과	075-414-5105
교육청지도부 특별지원교육과	075-414-5835	보건복지부	의료실	075-414-4746
교육청지도부 고교교육과	075-414-5846	보건복지부	생활복지실	075-414-4557
총무부 문교과	075-414-4520	보건복지부	생활복지실(모자담당)	075-414-4585
기획환경부 교통대책과	075-414-4367	교육청지도부	인권교육실	075-414-5822

■지방기관

◇교육국			
오토쿠니(乙訓)교육국	075-933-5130	츠후탄(中丹)교육국	0773-42-1200
야마시로(山城)교육국	0774-62-0008	탄고(丹後)교육국	0772-22-2175
난탄(南丹)교육국	0771-62-0304		

광역진흥국・보건소				소관시정촌(市町村)
야마시로 광역진흥국	0774-21-2101	오토쿠니보건소	075-933-1151	무코우시
				나가오카쿄시
				오오야마자키쵸
		야마시로북(北)보건소	0774-21-2191	우지시
				조요시
				쿠미야마쵸
		야마시로북(北)츠즈키(綴喜)지점	0774-63-5745	야와타시
				쿄타나베
				이테쵸
				우지타와라쵸
		야마시로남(南)보건소	0774-72-4300	기즈가와시
				카사기쵸
				와즈카쵸
				세이카쵸
				미나미야마시로무라
난탄(南丹)광역진흥국	0771-22-0422	난탄(南丹)보건소	0771-62-4751	카메오카시
				난탄시

				쿄탄바쵸
츄탄(中丹)광역진흥국	0773-62-2500	츄탄서(中丹西)보건소	0773-22-5776	후쿠치야마시
		츄탄동(中丹東)보건소	0773-75-0805	아야메시 마이즈루시
탄고(丹後)광역진흥국	0772-62-4301	탄고(丹後)보건소	0772-62-0361	미야즈시
				쿄탄고시
				요사노쵸
				이네쵸

제1편 영·유아를 위한 제도

명 칭	대여·지급	대 상 자	접 수 처	페이지
모자가정장 학급 등	지급	교토부(교토시 제외)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로서, 이하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자 · 영유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부 보건소	9
사립유치원 보육료경감 보조금	지급	이하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는 자 1. 교토부나 시가현, 오오사카부, 효고현, 나라 현내의 사립유치원에 해당년도 10월1일(만3세 아동은 1월시업일)현재 재적하는 원아 2. 보육료 부담자가 교토부내에 거주하고, 과 세 총소득액이 7,110천엔(711만엔)이하인 자	사립유치원	10
교통사고 유족아동	지급	부내(교토시 포함)에 거주하는, 교통사고에 의 해 부모를 잃은 영·유아	부교통대책과 부광역진흥국	11
유치원입학 장려사업	감면 (급부)	1.공립유치원 생활보호세대 · 시정촌(市町村)민세비과세세 대 · 시정촌(市町村)민세소득비과세세대 2.사립유치원 ①생활보호세대 · 시정촌민세비과세세대 ②시정촌민세소득비율비과세세대 ③시정촌민세소득비율과세액 34,500엔 이하의 세대 ④시정촌민세소득비율과세액 183,000엔 이하 의 세대	시정촌교육위원회 (유치원)	12

통칭(모자가정 장학금 등)

사 업 명	모자가정 장학금 등 지급 사업			
사업주체	교토부			
취지·목적	모자가정의 복지 추진을 위해, 교육 또는 양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함.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교토부(교토시 제외)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로서, 이하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자 · 영유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지 급 액	11,000엔 (연액)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신청월	구 분	지급대상기간	지급일
	4~5월	신청년도의 4월1일 현재 지급 대상자	해당년도의 4월~3월	8월 말
		신청년도의 4월2일 이후 지급 대상자	신청월의 다음 달 ~ 해당 년도 3월	
	6~2월	모든 신청자	신청월의 다음 달 ~ 해당 년도 3월	10월~3월
신청서류	○신청서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모자복지추진원 또는 민생·아동위원의 증명(신청서 중 증명란) 및 시정촌장의 증명(신청서 중 증명란)			
병행지급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과의 병행 지급 불가			
접 수 처 문 의 처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역의 부 보건소에 문의 바랍니다. (2페이지 참조)			
담 당 과	부 보건소복지실, 보건복지부 생활복지실 (모자·부자 지원 담당) (tel 075-414-4585)			
비 고	매년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영·유아를 위한 제도]

통칭(사립유치원 보육료 경감 보조금)

사 업 명	사립유치원 보육료 경감 보조금
사업주체	교토부
취지·목적	사립유치원의 원아를 가진 보호자의 보육료 부담 경감과 유아교육의 진흥을 꾀함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이하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는 자 1 교토부나 시가현, 오사카부, 효고현, 나라현내의 사립유치원에 해당 년도 10월1일 (만 3세 아동은 1월시업일) 현재 재적하는 원아 2 보육료부담자가 교토부내에 거주하고 과세 총소득액이 7,110천엔(711만엔)이하인 자
지 급 액	연간 17,000엔 단, 부담하는 보육료가 연간 17,000엔 미만인 경우는 해당 액수 지급
신청시기	(3세, 4세, 5세 아동) 9월~10월 경 (만 3세 아동) 12월~다음 해 1월 경
신청서류	신청서, 소득증명서류
지급시기	(3세, 4세, 5세 아동) 12월~ 다음 해 1월 경 (만 3세 아동) 3월 경
병행지급	
접 수 처	사립유치원
담 당 과	총무부문교과(tel 075-414-4520)
비 고	

[영·유아를 위한 제도]

통칭(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

사 업 명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 지급 사업
사업주체	교토부
취지·목적	교통사고에 의해 부모를 잃은 아동 또는 학생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원조하여, 건전한 육성을 꾀함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부내(교토시 포함)에 거주하고, 교통사고에 의해 부모를 잃은 영·유아
지 급 액	장학금 11,000엔(연간)
신청시기	5월 말일 (이후는 수시접수(단,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청서류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 지급 신청서
지급시기	7월 말일 (6월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달의 익월 말일에 지급)
병행지급	모자가정 장학금 등과의 병행 지급은 불가
접 수 처	부교통대책과, 부광역진흥국
담 당 과	기획환경부 교통대책과(tel 075-414-4367)
비 고	

통칭(유치원 취원 장려 사업)

사 업 명	유치원 취원 장려비 보조금																																																								
사업주체	국·시정촌(市町村)교육위원회																																																								
취지·목적	공립·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3세 아동(만 3세 아동 포함), 4세 아동이나 5세 아동의 보호자로서 소득액에 응하여 입원료·보육료(급부)를 감면함																																																								
대여·지급	감면(급부)																																																								
대상자 및 감면단가	감면(급부)액은 국가가 정한 단가로서 시정촌(市町村)에 따라 다름 1 공립유치원 생활보호 세대·시정촌(市町村)민세비과세 세대·시정촌(市町村)민세소득비율비과세 세대 <table><tr><td>첫째 자녀</td><td>연간</td><td>20,000엔</td><td>초등학교 1,2학년의 형제가 있는 경우</td></tr><tr><td>둘째 자녀</td><td>연간</td><td>38,000엔</td><td>해당 형제를 첫째 자녀로 인정</td></tr><tr><td>셋째 자녀 이하</td><td>연간</td><td>66,000엔</td><td>이 경우 연간금액</td></tr><tr><td></td><td></td><td></td><td>둘째 자녀 26,000엔</td></tr><tr><td></td><td></td><td></td><td>셋째 자녀이하 32,000엔</td></tr></table> 2 사립유치원 ①생활보호세대·시정촌(市町村)민세비과세 세대 <table><tr><td>첫째 자녀</td><td>연간</td><td>141,900엔</td><td>상기의 경우</td></tr><tr><td>둘째 자녀</td><td>연간</td><td>185,000엔</td><td>둘째 자녀 157,000엔</td></tr><tr><td>셋째 자녀 이하</td><td>연간</td><td>257,000엔</td><td>셋째 자녀 이하 171,000엔</td></tr></table> ②시정촌(市町村)민세소득비율비과세 세대 <table><tr><td>첫째 자녀</td><td>연간</td><td>107,600엔</td><td>상기의 경우</td></tr><tr><td>둘째 자녀</td><td>연간</td><td>162,000엔</td><td>둘째 자녀 126,000엔</td></tr><tr><td>셋째 자녀 이하</td><td>연간</td><td>250,000엔</td><td>셋째 자녀 이하 144,000엔</td></tr></table> ③시정촌(市町村)민세소득비율과세액 34,500엔 이하 세대 <table><tr><td>첫째 자녀</td><td>연간</td><td>81,700엔</td><td>상기의 경우</td></tr><tr><td>둘째 자녀</td><td>연간</td><td>143,000엔</td><td>둘째 자녀 103,000엔</td></tr><tr><td>셋째 자녀 이하</td><td>연간</td><td>245,000엔</td><td>셋째 자녀 이하 123,000엔</td></tr></table>	첫째 자녀	연간	20,000엔	초등학교 1,2학년의 형제가 있는 경우	둘째 자녀	연간	38,000엔	해당 형제를 첫째 자녀로 인정	셋째 자녀 이하	연간	66,000엔	이 경우 연간금액				둘째 자녀 26,000엔				셋째 자녀이하 32,000엔	첫째 자녀	연간	141,900엔	상기의 경우	둘째 자녀	연간	185,000엔	둘째 자녀 157,000엔	셋째 자녀 이하	연간	257,000엔	셋째 자녀 이하 171,000엔	첫째 자녀	연간	107,600엔	상기의 경우	둘째 자녀	연간	162,000엔	둘째 자녀 126,000엔	셋째 자녀 이하	연간	250,000엔	셋째 자녀 이하 144,000엔	첫째 자녀	연간	81,700엔	상기의 경우	둘째 자녀	연간	143,000엔	둘째 자녀 103,000엔	셋째 자녀 이하	연간	245,000엔	셋째 자녀 이하 123,000엔
첫째 자녀	연간	20,000엔	초등학교 1,2학년의 형제가 있는 경우																																																						
둘째 자녀	연간	38,000엔	해당 형제를 첫째 자녀로 인정																																																						
셋째 자녀 이하	연간	66,000엔	이 경우 연간금액																																																						
			둘째 자녀 26,000엔																																																						
			셋째 자녀이하 32,000엔																																																						
첫째 자녀	연간	141,900엔	상기의 경우																																																						
둘째 자녀	연간	185,000엔	둘째 자녀 157,000엔																																																						
셋째 자녀 이하	연간	257,000엔	셋째 자녀 이하 171,000엔																																																						
첫째 자녀	연간	107,600엔	상기의 경우																																																						
둘째 자녀	연간	162,000엔	둘째 자녀 126,000엔																																																						
셋째 자녀 이하	연간	250,000엔	셋째 자녀 이하 144,000엔																																																						
첫째 자녀	연간	81,700엔	상기의 경우																																																						
둘째 자녀	연간	143,000엔	둘째 자녀 103,000엔																																																						
셋째 자녀 이하	연간	245,000엔	셋째 자녀 이하 123,000엔																																																						

	④시정촌(市町村)민세소득비율과세액 183,000엔이하 세대 첫째 자녀 연간 57,500엔 상기의 경우 둘째 자녀 연간 127,000엔 둘째 자녀 81,000엔 셋째 자녀이하 연간 240,000엔 셋째 자녀 이하 104,000엔
신청시기	연초(도중 입원하는 아동 제외)
신청서류	시정촌(市町村)교육위원회가 정하는 신청서 혹은 첨부 서류
접 수 처	시정촌(市町村)교육위원회(유치원)
담 당 과	교육청 지도부학교 교육과(tel 075-414-5838)
비 고	면세(급부) 사무에 관해서는, 시정촌(市町村)교육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거주지역 시정촌(市町村)교육위원회에 문의해 주십시오.

제2편 초등학생을 위한 제도

명 칭	대여·지급	대 상 자	접 수 처	페이지
취학원조 사업	지급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 생활보호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곤 란한 세대	시정촌교육위원회 (초등학교)	15
취학 장려비	지급	초등학교의 특별지원 학급에 재적하는 아동	초등학교	16
생활보호법에 의한 부조비	지급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피보호 세대의 자녀	부 보건소 각 시 복지사무소	18
수학여행 보 조금	지급	교토부의 구역(교토시의 구역 제외)에 거주하 는 피보호자로서, 해당 세대에 속하는 초등학 생 자녀의 수학 여행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을 필요로 하는 자	부 보건소	19
모자가정 장 학금 등	지급	교토부(교토시제외)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어 머니로서, 이하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자 · 초등학생	부 보건소	20
교통사고 유 족아동 장학 금 등	지급	부내(교토시 포함)에 거주하는, 교통사고에 의 해 부모 등을 잃은 초등학생	부 교통대책과 부 광역진흥국	21
외국인학교 재학생을 위 한 수학 보조 금	지급	교토부의 구역(교토시 제외)에 거주하는 피보 호자로서, 학교법인 교토조선학원이 설치하는 초급학교에 재적하는 아동의 수학비용의 부담 을 필요로 하는 자	학교	22
모자복지자금 대부금	대부	교토부(교토시 제외)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로서, 현재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자	부 보건소	23

[초등학생을 위한 제도]

통칭(취학 원조사업)

사 업 명	취학 원조비
사업주체	국·시정촌 교육위원회
취지·목적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 취학 곤란이라 인정되는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용품 등의 필요한 원조를 행함.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 생활보호를 받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곤란한 세대
지 급 액	지급 항목과 지급액 등은 시정촌에 따라 다름 [요 보호자] 수학 여행비·의료비(학교병만) 등 [준 요보호자] 학용품비·통학용품비·교외활동비·통학비·수학여행비 의료비(학교병만)·학교급식비 등
신청시기	연초(연중의 경우는 수시)
신청서류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
접 수 처	시정촌 교육위원회(초등학교)
담 당 과	교육청 지도부 학교교육과 (tel 075-414-5838)
비 고	인정, 지급사무 등은 시정촌 교육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시정촌 교육위원회에 문의 바랍니다.

통칭(취학 장려비)

사 업 명	취학 장려비			
사업주체	국·시정촌			
취지·목적	교육기회 균등의 취지를 바탕으로, 특별지원 학급으로의 취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아동의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해, 그 부담 능력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함.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초등학교의 특별지원 학급에 재적하는 아동			
지 급 액	학용품비·통학용품비	1학년생	연간	6,305엔(지급)
	교외 활동비	그 외	연간	7,390엔(지급)
	숙박을 포함하는 교외 활동비			1,735엔(지급)
	신입학 아동 학용품비 등	입학시		9,950엔(지급)
	수학 여행비			10,300엔(지급)
	체육실기용구비	스키		12,650엔(지급)
		스케이트		5,635엔(지급)
	통학비			실비(지급)
	교류학습 교통비			실비(지급)
	학교 급식비			실비의 1/2(보조)
	확대 교재비	1페이지당 40엔을 한도로서 산정한 액수의 1/2에 해당하는 액수(1권당 한도 5,000엔)		
신청시기	시정촌에 따라 다름			
신청서류	각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			
지급시기	시정촌에 따라 다름			
병행지급	생활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부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부조와 취학 원조금의 보조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함.			

접 수 처	초등학교
담 당 과	교육청 지도부 특별지원 교육과 (tel 075-414-5835)
비 고	지급액은 국가가 정하고 있는 단가(헤이세이18년도-2006년도-실적)를 게재하고 있으므로, 시정촌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제도]

통칭(생활보호법에 의거한 부조비)

사 업 명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부조비	
사업주체	교토부・시	
취지・목적	생활보호법에 의한 피보호 세대의 자녀에 대해서, 의무교육에 필요한 교과서나 기타 학용품, 학교급식비 등을 지급함.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생활보호법에 의한 피보호자 세대의 자녀	
지 급 액	[교육 부조비]	
	교육 부조 기준액	월 2,150엔
	교재비・학교 급식비・통학비	실비
	학급비・PTA회비・아동회비 등	월 610엔 이내
	[생활 부조비]	
	입학 준비금(초등학교 입학시)	39,500엔 이내
교복 등 구입비(4학년 진학시)	12,700 엔 이내	
신청시기	각 복지사무소 등이 설정	
신청서류	각 복지사무소 등이 정하는 양식	
지급시기	각 복지사무소 등이 설정	
접 수 처 문 의 처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역의 부 보건소(2페이지 참조), 각 시 복지사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담 당 과	보건복지부 생활복지실(생활보호의료 담당) (tel 075-414-4557・4558)	
비 고		

[초등학생을 위한 제도]

통칭(수학 여행 원조금)

사 업 명	수학 여행 원조사업
사업주체	교토부
취지・목적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피보호자 세대 소속 초등학생의 수학 여행 준비비에 대하여 원조함.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교토부의 구역(교토시의 구역 제외)에 거주하는 피보호자로서, 해당 세대에 속하는 초등학생 아동의 수학 여행시 필요물품의 구입을 요하는 자
지 급 액	1인당 5,800엔
신청시기	수시
신청서류	신청서
병행지급	없음
접 수 처 문 의 처	상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의 부 보건소에 문의 바랍니다. (2페이지 참조)
담 당 과	보건복지부 생활복지실(생활보호의료 담당) (tel 075-414-4557・4558)
비 고	

[초등학생을 위한 제도]

통칭(모자가정 장학금 등)

사 업 명	모자가정 장학금 등 지급 사업			
사업주체	교토부			
취지・목적	모자가정의 복지 추진을 위해, 교육 또는 양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함.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교토부(교토시 제외)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로서, 이하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자 ・초등학생			
지 급 액	21,500엔 (연액)			
신청시기 지급시기	신청월	구 분	지급대상기간	지급일
	4~5월	신청년도의 4월1일 현재 지급 대상자	해당년도의 4월~3월	8월 말
		신청년도의 4월 2일 이후 지급 대상자	신청월의 다음 달 ~ 해당 년도 3월	
	6~2월	모든 신청자	신청월의 다음 달 ~ 해당 년도 3월	10월~3월
신청서류	○신청서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모자복지추진원 또는 민생・아동위원의 증명(신청서 중 증명란) 시정촌장의 증명(신청서 중 증명란)			
병행지급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과의 병행 지급 불가			
접 수 처 문 의 처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역의 부 보건소에 문의 바랍니다. (2페이지 참조)			
담 당 과	부 보건소복지실, 보건복지부 생활복지실 (모자・부자 지원 담당) (tel 075-414-4585)			
비 고	매년 신청서가 필요 합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제도]

통칭(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

사 업 명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 지급 사업
사업주체	교토부
취지·목적	교통사고에 의해 부모 등을 잃은 아동 혹은 학생에게 정신적·경제적 지원을 주어, 건전한 육성을 꾀함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부내(교토시 포함)에 거주하는, 교통사고에 의해 부모 등을 잃은 초등학생
지 급 액	장학금 21,500엔 (연액)
신청시기	5월 말일(이후는 수시접수(단,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청서류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 지급 신청서
지급시기	7월 말일 (6월 이후 신청한 경우는 신청월의 다음 달 말일)
병행지급	모자가정 장학금 등과의 병행 지급은 불가
접 수 처	부 교통대책과·부 광역진흥국
담 당 과	기획환경부 교통대책과(tel 075-414-4367)
비 고	

[초등학생을 위한 제도]

통칭(외국인학교 재학생을 위한 수학 보조금)

사 업 명	요보호자 수학원조사업										
사업주체	교토부										
취지・목적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자녀의 교육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 수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원조함.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교토부의 구역(교토시 구역 제외)에 거주하는 피보호자로서, 학교법인 교토조선학원이 설치하는 초급학교에 재적하는 아동의 수학 비용의 부담을 필요로 하는 자										
지 급 액	생활보호법의 교육 부조 등 기준액 범위내에서 다음에 해당 하는 항목 <table border="1"> <tr> <td>기준액</td><td>월 2,150엔(이내)</td></tr> <tr> <td>학급비 등</td><td>월 610엔(이내)</td></tr> <tr> <td>교재비 등 급식비 교통비</td><td>실 비</td></tr> <tr> <td>입학 준비금(입학시)</td><td>39,500엔(이내)</td></tr> <tr> <td>교복 등 구입비(4학년 진학시)</td><td>12,700엔(이내)</td></tr> </table>	기준액	월 2,150엔(이내)	학급비 등	월 610엔(이내)	교재비 등 급식비 교통비	실 비	입학 준비금(입학시)	39,500엔(이내)	교복 등 구입비(4학년 진학시)	12,700엔(이내)
기준액	월 2,150엔(이내)										
학급비 등	월 610엔(이내)										
교재비 등 급식비 교통비	실 비										
입학 준비금(입학시)	39,500엔(이내)										
교복 등 구입비(4학년 진학시)	12,700엔(이내)										
신청시기	연 1회, 각 학년마다										
신청서류	신청서, 재학 증명서										
지급시기	수시										
병행지급	없음										
접 수 처	학교										
담 당 과	보건복지부 생활복지실(생활보호의료 담당) (tel 075-414-4557・4558)										
비고											

[초등학생을 위한 제도]

통칭(모자복지자금 대부금)

사 업 명	모자복지자금 대부금
사업주체	교토부
취지·목적	모자가정의 아동의 입학 시에 직접 필요로 하는 피복·신발 등의 구입 자금에 대하여 대출을 행하여 수학을 지원 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증진함.
대여·지급	대부
대 상 자	교토부(교토시 제외)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로서 현재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자
대 여 액	취학 준비 자금 39,500엔 이내(무이자 대출)
신청시기	입학전
신청서류	신청서·호적등본 혹은 호적기재사항증명서·세대 전원의 주민표·소득(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취학통지서 등 입학에 증명하는 서류 등
대부개시	대출 결정·차용서 제출 후
연대보증인	필요
병행 지급	
반 제	졸업 후 6개월의 거치 기간 후
접 수 처 문 의 처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역의 부 보건소에 문의 바랍니다.(2페이지 참조)
담 당 과	부 보건소 복지실·보건복지부 생활복지실(모자·부자 지원 담당) (tel 075-414-4585)
비 고	

제3편 중학생을 위한 제도

명 칭	대여·지급	대 상 자	접수처	페이지
취학원조 사업	지급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 생활보호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곤 란한 세대	시정촌교육위원회 (중학교)	21
취학장려비	지급	중학교의 특별지원 학급에 재적하는 아동	중학교	22
생활보호법 에 의거한 부조비	지급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피보호 세대의 자녀	부 보건소 각 시 복지사무소	23
수학여행 원조금	지급	교토부의 구역(교토시의 구역 제외)에 거주하 는 피보호자로서, 해당 세대에 속하는 중학생 자녀의 수학여행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을 필요 로 하는 자	부 보건소	24
모자가정 장학금 등	지급	교토부(교토시 제외)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로서, 이하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자 • 중학생	부 보건소	25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	지급	부내(교토시 포함)에 거주하는, 교통사고에 의 해 부모 등을 잃은 중학생	부 교통대책과 부 광역진흥국	26
외국인학교 재학생을 위한 수학 원조금	지급	교토부의 구역(교토시 제외)에 거주하는 피보 호자로서, 학교법인 교토조선학원이 설치하는 중급학교에 재적하는 아동의 수학 비용의 부담 을 필요로 하는 자	학교	27
모자복지자 금 대부금	대부	교토부(교토시 제외)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로서, 현재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자	부 보건소	28

[중학생을 위한 제도]

통칭(취학 보조 사업)

사 업 명	취학 보조비
사업주체	국·시정촌 교육위원회
취지·목적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 취학 곤란이라 인정되는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용품 등의 필요한 보조를 행함.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 생활보호를 받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곤란한 세대
지 급 액	지급항목과 지급액 등은 시정촌에 따라 다름 [요 보호자] 수학여행비·의료비(학교병만) 등 [준요 보호자] 학용품비·통학 용품비·교외활동비·통학비·수학 여행비 의료비(학교병만)·학교 급식비 등
신청시기	연초(연중의 경우는 수시)
신청서류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
접 수 처	시정촌 교육위원회(중학교)
담 당 과	교육청 지도부 학교교육과(tel 075-414-5838)
비 고	인정, 지급사무 등은 시정촌 교육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시정촌 교육위원회에 문의 바랍니다.

[중학생을 위한 제도]

통칭(취학 장려비)

사 업 명	취학 장려비			
사업주체	국·시정촌			
취지·목적	교육기회 균등의 취지를 바탕으로, 특별지원 학급으로의 취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학생의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해 그 부담 능력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함.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중학교의 특별지원 학급에 재적하는 아동			
지 급 액	학용품비·통학 용품비	1학년생	연간	11,940엔(지급)
	교외 활동비	그 외	연간	13,025엔(지급)
	숙박을 포함하는 교외 활동비			2,920엔(지급)
	신입학 학생 학용품비 등	입학시		11,450엔(지급)
	수학 여행비			27,950엔(지급)
	체육실기 용구비	유도		3,650엔(지급)
		검도		25,250엔(지급)
		스키		18,150엔(지급)
		스케이트		5,635엔(지급)
	통학비			실비(지급)
	직장 실습 교통비			실비(지급)
	교류 학습 교통비			실비(지급)
	학교 급식비			실비의 1/2(보조)
	확대 교과서			1페이지당 40엔을 한도로서 산정한 액수의 1/2에 해당 하는 액수(1권당 한도 5,000엔)
	신청시기	시정촌에 따라 다름		
신청서류	각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			
지급시기	시정촌에 따라 다름			
병행지급	생활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부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부조와 취학보조금의 원조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			
접 수 처	중학교			
담당과	교육청 지도부 특별지원 교육과(tel 075-414-5835)			
비 고	지급액은 국가가 정하고 있는 단가(헤이세이18년도-2006년도-실적)를 게재하고 있으므로, 시정촌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중학생을 위한 제도]

통칭(생활 보호법에 의거한 부조비)

사 업 명	생활 보호법에 의거한 부조비									
사업주체	교토부・시									
취지・목적	생활 보호법에 의거한 피보호 세대의 자녀에 대해서, 의무교육에 필요한 교과서나 기타 학용품, 학교 급식비 등을 지급함.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생활 보호법에 의거한 피보호자 세대의 자녀									
지 급 액	[교육 부조비] <table><tr><td>교육 부조기준액</td><td>월 4,180엔</td></tr><tr><td>교재비・학교 급식비・통학비</td><td>실비</td></tr><tr><td>학급비・PTA회비・학생회비 등</td><td>월 700엔 이내</td></tr></table> [생활 부조비] <table><tr><td>입학 준비금(중학교 입학시)</td><td>46,100엔 이내</td></tr></table>		교육 부조기준액	월 4,180엔	교재비・학교 급식비・통학비	실비	학급비・PTA회비・학생회비 등	월 700엔 이내	입학 준비금(중학교 입학시)	46,100엔 이내
교육 부조기준액	월 4,180엔									
교재비・학교 급식비・통학비	실비									
학급비・PTA회비・학생회비 등	월 700엔 이내									
입학 준비금(중학교 입학시)	46,100엔 이내									
신청시기	각 복지사무소 등이 설정									
신청서류	각 복지사무소 등이 정하는 양식									
지급시기	각 복지사무소 등이 설정									
접 수 처 문 의 처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역의 부 보건소(2페이지 참조), 각 시 복지 사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담 당 과	보건복지부 생활복지실(생활보호의료 담당) (tel 075-414-4557・4558)									
비 고										

[중학생을 위한 제도]

통칭(수학 여행 원조금)

사 업 명	수학 여행 보조사업
사업주체	교토부
취지・목적	생활 보호법에 의거한 피보호자 세대 소속 중학생의 수학 여행 준비비에 대하여 원조 함.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교토부의 구역(교토시의 구역 제외)에 거주하는 피보호자로서, 해당 피보호 세대에 속하는 중학교 학생의 수학 여행시 필요 물품의 구입을 요하는 자
지 급 액	1인당 6,800엔
신청시기	수시
신청서류	신청서
병행지급	없음
접 수 처 문 의 처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역의 부 보건소에 문의 바랍니다. (2페이지 참조)
담 당 과	보건복지부 생활복지실(생활보호의료 담당) (tel 075-414-4558)
비 고	

[중학생을 위한 제도]

통칭(모자가정 장학금 등)

사 업 명	모자가정 장학금 등 지급 사업			
사업주체	교토부			
취지・목적	모자가정의 복지 추진을 위해, 교육 또는 양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함.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교토부(교토시제외)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로서, 이하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자 ・ 중학생			
지 급 액	43,000엔 (연액)			
신청시기 지급시기	신청월	구 분	지급대상기간	지급일
	4~5월	신청 년도의 4월1일 현재 지급 대상자	해당 년도의 4월~3월	8월 말
		신청 년도의 4월2일 이후 지급 대상자	신청월의 다음 달 ~ 해당 년도 3월	
	6~2월	모든 신청자	신청월의 다음 달 ~ 해당 년도 3월	10월~3월
신청서류	○신청서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모자복지 추진원 또는 민생・아동위원의 증명(신청서 중 증명란) 시정촌장의 증명(신청서 중 증명란)			
병행지급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과의 병행 지급 불가			
접 수 처 문 의 처	상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의 부 보건소에 문의 바랍니다. (2페이지 참조)			
담 당 과	부 보건소 복지실, 보건복지부 생활복지실 (모자・부자 지원 담당) (tel 75-414-4585)			
비 고	매년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중학생을 위한 제도]

통칭(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

사 업 명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 지급사업
사업주체	교토부
취지·목적	교통사고에 의해 부모 등을 잃은 아동 혹은 학생에게 정신적·경제적 원조를 주어, 건전한 육성을 꾀함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부내(교토시 포함)에 거주하는, 교통사고에 의해 부모 등을 잃은 중학생
지 급 액	장학금 43,000엔 (연액)
신청시기	5월 말일(이후는 수시접수(단,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청서류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 지급 신청서
지급시기	7월 말일 (6월 이후 신청한 경우는 신청월의 다음 달 말일)
병행지급	모자가정 장학금 등과의 병행 지급은 불가
접 수 처	부 교통대책과·부 광역진흥국
담 당 과	기획환경부 교통 대책과(tel 075-414-4367)
비 고	

[중학생을 위한 제도]

통칭(외국인학교 재학생을 위한 수학원조금)

사 업 명	요보호자 수학지원사업									
사업주체	교토부									
취지・목적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자녀의 교육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 수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원조함.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교토부의 구역(교토시 제외)에 거주하는 피보호자로서, 학교법인 교토조선학원이 설치하는 중급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수학 비용의 부담을 필요로 하는 자									
지 급 액	생활보호법의 교육부조 등 기준액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 <table><tr><td>기준액</td><td>월 4,180엔(이내)</td></tr><tr><td>학급비 등</td><td>월 700엔(이내)</td></tr><tr><td>교재비 등 급식비 교통비</td><td>실비</td></tr><tr><td>입학 준비금(입학시)</td><td>46,100엔(이내)</td></tr></table>		기준액	월 4,180엔(이내)	학급비 등	월 700엔(이내)	교재비 등 급식비 교통비	실비	입학 준비금(입학시)	46,100엔(이내)
기준액	월 4,180엔(이내)									
학급비 등	월 700엔(이내)									
교재비 등 급식비 교통비	실비									
입학 준비금(입학시)	46,100엔(이내)									
신청시기	연 1회, 각 학년마다									
신청서류	신청서, 재학증명서									
지급시기	수시									
병행지급	없음									
접 수 처	학교									
담 당 과	보건복지부 생활복지실(생활보호의료 담당) (tel 075-414-4557・4558)									
비 고										

[중학생을 위한 제도]

통칭(모자복지자금 대부금)

사 업 명	모자복지자금 대부금
사업주체	교토부
취지·목적	모자가정의 아동의 입학시에 직접 필요로 하는 피복·신발 등의 구입 자금에 대하여 대출을 행하여 수학을 지원 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증진함.
대여·지급	대부
대 상 자	교토부(교토시 제외)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로서 현재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자
대 여 액	취학준비자금 46,100엔 이내(무이자 대출)
신청시기	입학전(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역의 부 보건소복지실과 상담을 바랍니다.)
신청서류	신청서·호적등본 혹은 호적기재사항증명서·세대 전원의 주민표·소득(수입)을 증명하는 서류·취학통지서 등 입학에 증명하는 서류 등
대부개시	대출 결정·차용서 제출 후
연대보증인	필요
병행 지급	
반 제	졸업 후 6개월의 거치 기간 후
접 수 처 문 의 처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역의 부 보건소에 문의 바랍니다.(2페이지 참조)
담 당 과	부 보건소 복지실·보건복지부 생활복지실(모자·부자 지원담당) (tel 075-414-4585)
비 고	

제4편 중학교 졸업생을 위한 제도

명 칭	대여·지급	대 상 자	접 수 처	페이지
기능취득 자금·입소 준비금	지급	교토부의 구역(교토시의 구역 제외)에 거주하는 세대 중, 경제적 이유에 의해 기능 취득이 곤란한 세대의 자녀(만 20세에 달하는 날 이후부터 3월 31일까지 시설에 입소하는 자녀)가 중학교 졸업 후 계속해서 기능취득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 1 생활보호 수급 세대의 자녀 2 경제적 이유에 의해 기능 취득이 곤란한 세대의 자녀(소속 세대의 총수입이 생활보호 기준의 1.8배 이내)	부 보건소 부 광역 진흥국	34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기능취득 비·취직 준비금	지급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피보호 세대의 자녀	부 보건소 각 시 복지 사무소	36
직업 훈련 지원 제도	지급	공공직업 안정소의 수강 지시에 의해 공공직업 능력개발 시설에서 훈련을 받는 자	공공직업 능력 개발 시설	37
장애자 등 직장적응훈련 수당	지급	공공직업 안정소장이 훈련 받는 것을 지시한 장애자 등으로서 취직이 곤란한 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공직업 안정소	38
모자복지자금 대부금	대부	교토부(교토시 제외)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로서, 현재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자	부 보건소	39
기능자 육 성자금	대여	공공직업 능력 개발 시설 입교한 자로서, 경제적 이유에 의해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곤란한 자(훈련 수당 수급자는 제외)	공공직업 능력 개발 시설	41

[중학교 졸업생을 위한 제도]

통칭(기능 취득 자금·입소 준비금)

사 업 명	기능 취득 원호 사업														
사업주체	교토부														
취지・목적	경제적 이유에 의해 기능 습득이 곤란한 자에 대해, 기능 취득 자금을 지급 함으로써 세대의 자립갱생을 꾀함.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교토부의 구역(교토시의 구역 제외)에 거주하는 세대 중, 경제적 이유에 의해 기능 취득이 곤란한 세대의 자녀(만 20세에 달하는 날 이후부터 3월31일까지 시설에 입소하는 자녀)가 중학교 졸업 후 계속해서 기능 취득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 1 생활보호 수급 세대의 자녀 2 경제적 이유에 의해 기능 취득이 곤란한 세대의 자녀(소속 세대의 총수입이 생활보호 기준의 1.8배 이내)														
지 급 액	<table><tr><th>시설의 종류</th><th>기능취득자금</th><th>입소 준비금</th></tr><tr><td>공공직업 능력 개발 시설 (부립 교토고등 기술전문학교)</td><td>5,000엔/월</td><td rowspan="4">55,000엔</td></tr><tr><td>간호학교(간호전문학교 등)</td><td>13,000엔/월</td></tr><tr><td>고교형태(나라고 등 전수학교 등)</td><td>21,000엔/월</td></tr><tr><td>실기학교(각종 전문학교・전수학교 등)</td><td>24,000엔/월</td></tr></table>			시설의 종류	기능취득자금	입소 준비금	공공직업 능력 개발 시설 (부립 교토고등 기술전문학교)	5,000엔/월	55,000엔	간호학교(간호전문학교 등)	13,000엔/월	고교형태(나라고 등 전수학교 등)	21,000엔/월	실기학교(각종 전문학교・전수학교 등)	24,000엔/월
시설의 종류	기능취득자금	입소 준비금													
공공직업 능력 개발 시설 (부립 교토고등 기술전문학교)	5,000엔/월	55,000엔													
간호학교(간호전문학교 등)	13,000엔/월														
고교형태(나라고 등 전수학교 등)	21,000엔/월														
실기학교(각종 전문학교・전수학교 등)	24,000엔/월														
신청시기	・1차 신청 : 3월 중순 ・2차 신청 : 4월 중순(이후는 수시접수)														
신청서류	신청서, 재학(재적)증명서, 수입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														
지급시기	・제1기분 : 4월 하순(1차 신청분) 5월 하순(2차 신청분) ・제2기분 : 8월 ・제3기분 : 12월 ※1 2차신청 이후의 수시접수분에 관해서는 그 때마다 지급 ※2 입소 준비금은 4월 혹은 5월에 전액 지급														
병행지급	타 유사 급부 등을 받는 경우는 지급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음.														

접 수 처 문 의 처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역의 부 보건소(2페이지 참조), 부 광역진흥국에 문의 바랍니다.
담 당 과	보건복지부 생활복지실 (tel 075-414-4557 • 4558)
비 고	

[중학교 졸업생을 위한 제도]

통칭(생활보호법에 의거한 기능취득비·취직준비금)

사 업 명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기능 취득비・취직 준비금					
사업주체	교토부・시					
취지・목적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는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전수학교나 각종 학교, 공공직업 능력 개발 시설 등에서 기능을 습득 할 시 필요한 경비나, 취직이 확정 되었을 경우의 준비금을 지급함으로써 세대의 자립갱생을 꾀함.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피보호 세대의 자녀					
지 급 액	<table><tr><td>기능 습득비</td><td>연 380,000엔 이내</td></tr><tr><td>취직 준비금</td><td>28,000엔 이내</td></tr></table>		기능 습득비	연 380,000엔 이내	취직 준비금	28,000엔 이내
기능 습득비	연 380,000엔 이내					
취직 준비금	28,000엔 이내					
신청시기	각 복지사무소 등이 설정					
신청서류	각 복지사무소 등이 정하는 양식					
지급시기	각 복지사무소 등이 설정					
접 수 처 문 의 처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역의 부 보건소(2페이지 참조), 각 시 복지사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담 당 과	보건복지부 생활복지실 (생활보호의료 담당) (tel 075-414-4557・4558)					
비 고						

[중학교 졸업생을 위한 제도]

통칭(직업훈련 지원 제도)

사 업 명	직업훈련 지원 사업
사업주체	교토부·국
취지·목적	공공직업 능력 개발 시설의 직업 훈련을 받는 모자가정의 어머니, 중국귀국자 등에 대해, 훈련기간 중의 생활지원을 꾀하기 위해, 훈련 수당을 지급함.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공공직업 안정소의 수강 지시에 의해 공공직업 능력 개발 시설에서 훈련을 받는 자
지 급 액	기본 수당 1일 3,530엔 기능습득 수당 수강 수당 1일 500엔, 통근 수당 월액(한도액) 42,500엔
신청시기	입학시
신청서류	훈련수당 등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직업훈련수강지시서
지급시기	다음 달 15일
접 수 처	공공직업 능력 개발 시설
담 당 과	부민노동부 능력개발과 (tel 075-414-5105)
비 고	

[중학교 졸업생을 위한 제도]

통칭(장애자등 직장적응 훈련 수당)

사 업 명	장애자 등 직장적응 훈련
사업주체	교토부
취지・목적	취직이 곤란한 장애자 등을 대상으로, 사무소에서 해당 사무소의 업무에 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작업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촉진함.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공공직업 안정 소장이 훈련 받는 것을 지시한 장애자 등으로서 취직이 곤란한 자
지 급 액	기본 수당 1일 3,530엔 기능습득 수당 수강 수당 1일 500엔 통근 수당 월액(한도액) 42,500엔
신청시기	수시(공공직업 안정소에서 사업주와 관계를 맺는다)
신청서류	직장적응훈련수강신청서
지급시기	일반직장 적응 훈련은 1력월 종료 후, 단기 직장적응 훈련은 훈련종료 후의 직장적응 훈련실시상황보고서의 제출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병행지급	없음
접 수 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공직업 안정소
담 당 과	부민노동부 능력개발과 (tel 075-414-5105)
비 고	

[중학교 졸업생을 위한 제도]

통칭(모자복지 자금 대부금)

사 업 명	모자복지 자금 대부금		
사업주체	교토부		
취지・목적	모자가정의 아동이 수업・취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수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증진함.		
대여・지급	대부		
대 상 자	교토부(교토시 제외)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로서 현재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자		
대 여 액	취직준비자금 100,000엔 이내(무이자 대부)		
	수업자금 월 50,000엔 이내(무이자 대부)		
	취학준비자금		
	수업시설에 입소	자택 통학 75,000엔 이내(무이자 대부)	
		자택외 통학85,000엔 이내(무이자 대부)	
대부상담시기	대부에 관한 상담은 진로검토시기(9월)부터 접수합니다. 가능한 빨리 부 보건소복지실에 상담 바랍니다.		
신청서류	취직준비 자금	신청서・호적등본 또는 호적기재사항증명서・세대전원의 주민표・소득(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등	
	수업 자금・취학준비 자금	신청서・호적등본 또는 호적기재사항증명서・세대전원의 주민표・소득(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등	
대부개시	대부 결정, 차용서 등의 제출 후		
연대 보증인	필요		
병행지급	생활복지자금(준비비)과의 병행지급 불가		
반제	취직 준비자금		
	대부일로 부터 1년의 거치기간 후		
	수업 자금		
	지식기능 습득 후 1년의 거치기간 후		
	취학준비 자금		
	졸업 후 6개월의 거치기간 후		

접 수 처 문 의 처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역의 부 보건소에 문의 바랍니다. (2페이지 참조)
담 당 과	부 보건소복지실, 보건복지부 생활복지실(모자·부자 지원담당) (tel 075-414-4585)
비 고	

[중학교 졸업생을 위한 제도]

통칭(기능자 육성 자금)

사 업 명	기능자 육성 자금
사업주체	독립행정법인 고용·능력개발기구
취지·목적	우수한 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6개월 이상 공공직업 능력 개발 시설의 시설내 훈련을 받는 자 중, 경제적 이유에 의해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곤란한 자에 대해서 대부를 행함.
대여·지급	대여
대 상 자	공공직업 능력 개발 시설에 입교한 자로서, 경제적 이유에 의해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곤란한 자(훈련수당 수급자를 제외)
대 여 액	월액 18,200엔 ~ 21,400엔
신청시기	입교시
신청서류	육성자금대출신청서, 소득증명서 등
지불시기	매월
연대보증인	성인 노동자
반제기간	16년 이내
접 수 처	공공직업 능력 개발 시설
담 당 과	부민노동부 능력 개발과(tel 075-414-5105)
비 고	

제5편 고등학생·고등전문학교생 등을 위한 제도

명 칭	대여·지급	대 상 자	접 수 처	페이지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고등취학부 조	지급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피보호 세대의 자녀	부 보건소, 각 시 복지사무소	46
부립고등학교 수업료 감면	면제	이하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며 수학 의욕이 투 철한 자 1. 보호자가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보호를 받 고 있는 자 2. 경제적 사정에 의해 수업료의 납부가 곤란 하거나 아동복지 시설의 아동으로 납부가 곤란한 자 3. 재해에 의해 생활이 곤란한 자 4. 위 3항목 외 교육상 특히 면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부립고등학교	47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교토부의 구역(교토시 제외)에 거주하는 자로, 이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 1.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피보호 세대의 자녀 (사립 고등학교(통신학교 제외)에 수학하고 있는자에 한정 됨) 2. 시정촌(市町村)민세비과세 세대의 자녀로, 이하의 세대에 속하는 자 (1) 모자세대(2)부자세대(3)아동세대(4)장애자 세대(5)장기치료자세대(6)지사(知事)가 특 별의 인정한 (1)-(5)에 준거하는 세대	부 보건소,부 광역 진흥국	48
교토부 내 부의 사립 고등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 비경감 보 조금	지급	이하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는 자 1. 교토부 또는 오사카부,효고현,시가현,나라 현,미에현,후쿠이현의 사립고등학교(전일제, 정시제)및 교토부의 사립고등학교(통신제) 에 해당 년도 10월 1일 현재 재적 하고 있는 자 2. 학비 부담자가 교토부내에 거주하며, 시정	사립 고등학교	50

		촌(市町村)민세,부민세의 과세 총소득 금액 이 7,110천엔(711만엔)이하의 자		
과다소밀지 역에 거주 하는 고등 학생 통학 비 보조금	지급	이하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는 자 1. 통학비 부담자가 교토부내에 거주하며,학 생이 부내의 공립고등학교 또는 사립고등 학교에 통학하는 자 2. 통학비 부담자의 전년도 소득금액이 소득 기준액에 미달한 자 3. 학생의 교통기관 이용 거리가 편도15km이 상으로 한달 정기권 구입비가 22,100엔을 넘는 자	고등학교	51
모자가정 장학금 등	지급	교토부(교토시 제외)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로서 ,이하의 아동을 부양 하고 있는 자 ・ 고등학생(전수학교의 고등과정에 재적하는 자 포함)	부 보건소	52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지급	부내(교토시 제외)에 거주하는 교통사고에 의 해 부모 등을 잃은 고등학생 등	부 교통대책과,부 광영진흥국	54
사립고등전 수학교생 장학 보조 금	지급	이하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는 자 1. 교토부내의 사립고등전수 학교(수업년도가 3년 이상의 고등과정)에 해당 년도 10월 1 일 현재 재적하는 자 2. 학비부담자가 교토부내에 거주하고,과세 총소득액이 7,110천엔(711만엔)이하인 자	사립고등전수학교	55
정시제 또 는 통신제 과정 교과 서 무상 급 여	급여	이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1. 부립고등학교의 정시제과정 또는 통신제 과정에 재학하는 직업학생 중 급여(보조)를 희망하는 자 2. 직업학생 외의 학생으로 구직중 건강상의 문제로 취업이 곤란 하며 급여(보조)를 희 망하는 자	각 정시제・통신제 과정설치 고등학교	56

정시제 또는 통신제 과정 수학 장학금	대여(무이자)	부내의 공립·사립고등학교 정시제과정 또는 통신제과정, 부내에 주소를 재적하며 타 부현(府県)의 광역통신제과정을 배우는 학생으로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1. 경제적인 이유로 수학이 곤란한 자 2. 경제적 수입을 얻기 위한 직업학생 또는 그에 해당하는 자 3.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않는 자	각 정시제·통신제 과정설치 고등학교	57
모자복지자금 대부금	대부	교토부(교토시 제외)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로서 현재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자	부 보건소	58
생활복지자금 대부금 (수학자금)	대부	저소득 세대(생활보호 기준의 1.8배 이내의 소득 수준의 세대)	시구청촌(市区町村) 사회복지협의회(민생의원)	60
고등학생 등 수학 지원 사업(수학금)	대여(무이자)	① 고등학교, 고등전수학교, 중등교육학교(후기과정) 특별지원학교(고등부) 전수학교(고등과정) 의 학생 ② 생활보호기준의 1.5배이하	부 교육청 지휘부 교육과 부 총무부 문교과	61
	이자 보급	①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후기과정), 특별지원학교(고등부), 전수학교(고등과정) 학생의 보호자 ② 상기② 기준을 넘은 세대의 주요 생계 유지자의 연간수입이 구 일본육영회소득기준이하		
고등학생 등 수학지원 사업(수학준비금)	대여(무이자)	① 고등학교, 고등전문학교, 중등교육학교(후기과정), 특별지원학교(고등부), 전수학교(고등과정)의 학생 ② 고등학교 등 수학금 대여자 ③ 주요 생계유지자의 연간수입이 150만엔 미만	부 교육청 지휘부 교육과 부 총무부 문교과	63
	이자보급	① 상기①의 보호자 ② 상기②의 보호자 ③ 주요 생계유지자의 연간수입이 150만엔미만		

독립행정법 인 일본학 생지원기구 장학금	대여(무이자)	고등전문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예약채용: 재학하고 있는 중학교 재학채용: 재학하고 있는 고등전문학교	65
--------------------------------	---------	--------------------------------	---	----

[고등학생을 위한 제도]

통칭(생활보호법에 의한 고등취학 보조금)

사 업 명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부조비		
사업주체	교토부·시		
취지·목적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피보호세대의 자녀에 대해서, 고등학교 취학에 필요한 입학 준비금, 학용품비 등을 지급 함으로서 세대의 자립의 갱생을 꾀함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피보호자 세대의 자녀		
지 급 액	[고등학교 취학 비용의 지급 내용]		
	비 목	주요 내용	기준액
	기본액	학용품비, 통학용품비 등	5,300 엔
	수험료·입학금	입학교사료·입학금	공립고등학교 상당액
	수업료	수업료(부립고교는 감면제도 이용)	공립고교 상당액
	입학준비금	교복, 가방, 구두 등	61,400엔 이내
	학급비	학급비, 학생회비	1,460엔 이내
	통학비	통학을 위한 교통비	실비 지급
	교재비	교과서, 부교재적 도서 등	실비 지급
신청시기	각 복지사무소 등이 설정		
신청서류	각 복지사무소 등이 정하는 양식		
지급시기	각 복지사무소 등이 설정		
접 수 처 문 의 처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역의 부 보건소(2페이지 참조), 각 시 복지사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담 당 과	보건복지부 생활복지실(생활보호의료담당) (tel 075-414-4557・4558)		
비 고			

[고등학생을 위한 제도]

통칭(부립 고등학교 수업료 감면)

사 업 명	부립 고등학교 수업료 감면 조치
사업주체	교토부 교육위원회
취지・목적	교육의 기회평등을 취지로 부립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수학을 원조함.
대여・지급	면제
대 상 자	이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업 의욕이 투철한 자 1 보호자가 생활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자 2 경제적 사정에 의해 수업료 납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자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으로서 납부가 곤란한 자 3 재해에 의해 생활이 곤란한 자 4 위 3항목 외 교육상 특별히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면 제 액	(전일제) 연간 헤이세이17-19년도 입학생 115,200엔 (정시제) 연간 헤이세이17-19년도 입학생 14,400엔 헤이세이16년도 입학생 13,800엔
신청시기	1차 신청: 4월 중순(생활보호지급 세대에 한함) 2차 신청: 6월 중순 (이후와 수시접수)
신청서류	신청서, 소득에 관한 증명서 등
병행지급	고등학교 수학원조 사업[고등학교 장학금(시정촌(市町村)민세비과세세대)]의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
접 수 처	부립 고등학교
담 당 과	교육청 지도부 고교교육과(tel 075-414-5849)
비 고	

[고등학생,고등전수학교 학생을 위한 제도]

통칭(고등학교 장학금)

사 업 명	고등학교 수학생원조 사업																										
사업주체	교토부																										
취지·목적	교육의 기회 평등을 취지로 생활보호 세대 또는 시정촌(市町村)민세비과세 세대의 자녀의 고등학교에 진학을 촉진하는 것과 함께 세대의 자립 향상을 꾀함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교토부내의 구역(교토시 제외)에 거주하는 자로,이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 1.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피보호세대의 자녀(사립고등학교(통신학교 제외)에 재적하고 있는 자에 한정 함) 2. 시정촌(市町村)민세비과세 세대의 자녀로,이하의 세대에 속하는 자 (1) 모자세대(2)부자세대(3)아동세대(4)장애자세대(5)장기치료자세대(6)지사(知事)가 특별의 인정한 (1)-(5)에 준거한 세대 (주) (1)(2)(3)에 한해서는 세대원의 연령조건 있음 (4)는 장애의 정도에 따른 조건이 있음																										
지 급 액	[생활보호 세대의 자녀] <table border="1"> <tr> <th></th><th></th><th>장학금</th><th>입학 준비금</th></tr> <tr> <td>사립</td><td>전일제 정시제</td><td>월 19,000 엔 월 10,000 엔</td><td>110,000 엔 69,000 엔</td></tr> </table> [시정촌(市町村)민세비과세 세대의 자녀] <table border="1"> <tr> <th></th><th></th><th>장학금</th><th>입학준비금</th></tr> <tr> <td>국공립</td><td>전일제,정시제 고전(高専)</td><td>월 14,000엔 월 16,000엔</td><td>63,000엔 63,000엔</td></tr> <tr> <td>사 립</td><td>전일제 정시제</td><td>월 33,000엔 월 24,000엔</td><td>178,000 엔 137,000 엔</td></tr> <tr> <td>통신제</td><td></td><td>월 9,000엔</td><td>45,000엔</td></tr> </table>					장학금	입학 준비금	사립	전일제 정시제	월 19,000 엔 월 10,000 엔	110,000 엔 69,000 엔			장학금	입학준비금	국공립	전일제,정시제 고전(高専)	월 14,000엔 월 16,000엔	63,000엔 63,000엔	사 립	전일제 정시제	월 33,000엔 월 24,000엔	178,000 엔 137,000 엔	통신제		월 9,000엔	45,000엔
		장학금	입학 준비금																								
사립	전일제 정시제	월 19,000 엔 월 10,000 엔	110,000 엔 69,000 엔																								
		장학금	입학준비금																								
국공립	전일제,정시제 고전(高専)	월 14,000엔 월 16,000엔	63,000엔 63,000엔																								
사 립	전일제 정시제	월 33,000엔 월 24,000엔	178,000 엔 137,000 엔																								
통신제		월 9,000엔	45,000엔																								

신청시기	[생활보호 세대의 자녀] 제1차 신청: 2월 이후는 수시 [시정촌(市町村)민세비과세 세대의 자녀] 제1차 신청 (신 1학년에 한함): 2월 제2차 신청: 6월 이후는 수시
신청서류	[생활보호세대의 자녀] 지급신청서, 재학증명서, 생활보호수급증명서등 [시정촌(市町村)민세비과세세대의 자녀] 지급신청서, 재학증명서, 시정촌(市町村)민세비과세증명서 신체장애자세대에 한해서는 신체장애자수첩, 연금증서 복사 한 것 장기치료자세대에 한해서는 의사의 진단서 등
지급시기	생활보호 세대의 자녀 시정촌(市町村)민세비과세 세대의 자녀 제1기분 (4월부터 7월까지) 4월 4월 또는 7월 제2기분 (8월부터 11월까지) 8월 8월 제3기분 (12월부터 3월까지) 12월 12월
병행지급	다음 급부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지급액의 조절(감액)이 있을 수 있음 모자가정 장학금 ,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부립 고등학교 수업료 감면(시정촌(市町村)민세비과 세세대의 자녀에 한함) 부립 고등학교정시제 또는 통신제과정 수학 장려금(시정촌(市町村)민세비과세 세대의 자녀)
접 수 처 문 의 처	상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의 부 보건소(2페이지 참조), 부 광역진흥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담 당 과	보건복지부 생활복지실(tel 075-414-4557 • 4558)
비 고	

[사립고등학생을 위한 제도]

통칭(교토부내외의 사립고등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비경감 보조금)

사 업 명	교토부내외의 사립고등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비경감보조금
사업주체	교토부
취지・목적	사립고등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비부담자 의 교육비부담을 경감한다.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이하의 어느항목에도 해당하는 자 1 .교토부 또는 오사카부,효고현,시가현,나라현,미에현,후쿠이현의 사립고등학교(전일제,정시제)및 교토부의 사립고등학교(통신제)에 해당년도 10월1일 현재 재적하고 있는 자 2 .학비부담자가 교토부내에 거주하며 시정촌(市町村)민세부,민세의 과세 총소득금액이 7,110천엔(711만엔)이하 인 자
지 급 액	연간 48,000엔(통신제 17,000엔) 단, 학교에 실제 납부하는 수업료의 연간 액수에서 교토부립고등학교 수업료 연간상당액을 뺀 금액이 48,000엔(통신제 17,000엔)미만인 경우는 그 차액
신청시기	9월-10월경
신청서류	신청서,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지급시기	12월-다음 해 1월경
병행지급	
접 수 처	사립고등학교
담 당 과	총무부 문교과(tel 075-414-4517)
비 고	

[고등학생을 위한 제도]

통청(과다소밀지역 등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통학 보조금)

사 업 명	과다소밀 지역 등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통학비 보조 사업
사업주체	교토부 교육위원회(공립고교), 교토부(사립고교)
취지・목적	과다소밀지역등에서 통학하는 고등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경비부담을 경감하며 교육의 기회균등 등을 꾀함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이하의 모든 항목에 해당하는 자 1. 통학비 부담자가 교토부내에 거주하고, 학생이 부내의 공립고교 또는 사립고교에 통학하는 자 2. 통학비 부담자의 전년도 소득금액이 소득기준액에 미달하는 자 3. 학생의 교통기관 이용 거리가 편도 15km 이상으로 한 달의 정기권구입비가 22,100엔을 넘는 자
지 급 액	1 해당자가 1명인 경우 (한달 정기구입비 -22,100엔)× 1 / 2 2 해당자가 2명인 경우 (한달 정기구입비 -16,500엔)× 1 / 2 *단, 2명의 한달 정기권 구입비 합계금이 55,400엔 미만인 경우는 별도로 조절 가능
신청시기	원칙적으로 6-7월(연도 도중부터 대상자에 포함된 경우는 그 때마다)
신청서류	신청서, 소득에 관한 서류
지급시기	9월 또는 2-3월에, 각각의 해당월분까지를 지급 *연도 도중의 신청은 신청일의 다음 달분부터 지급함
병행지급	제한 없음
접 수 처	고등학교
담 당 과	공립고교: 교육청지도부 고등학교 교육과(tel 075-414-5846) 사립고교: 총무부문교과(tel 075-414-4518)
비 고	

[고등학생,고등전문학교 학생을 위한 제도]

통칭(모자가정 장학금 등)

사 업 명	모자가정 장학금 등 지급 사업			
사업주체	교토부			
취지・목적	모자가정의 복지 추진을 위해, 교육 또는 양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함.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교토부(교토시 제외)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로서, 이하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자 ・고등학생(전수학교의 고등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 포함)			
지 급 액	장학금 64,000엔(연액) 고등학교입학준비금 35,000엔(신청년도의 4월 1일에 대한 지급 대상자로,4월-5월 내에 신청한 자에 한함)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신청월	구 분	지급대상기간	지급일
	4~5월	신청년도의 4월1일 현재 지급 대상자	해당년도의 4월~3월	8월 말
		신청년도의 4월 2일 이후 지급 대상자	신청월의 다음 달 ~ 해당년도 3월	
	6~2월	모든 신청자	신청월의 다음달 ~ 해당년도 3월	10월~3월
신청서류	○신청서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모자복지추진원 또는 민생・아동위원의 증명(신청서 중 증명란) 및 시정촌장의 증명(신청서 중 증명란) ○재학증명 : 학교장의 증명 (신청서의 증명란 또는 재학증명서)			
병행지급	다음의 제도와는 병행지급 불가 ○고등학교 장학금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등			

접 수 처 문 의 처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역의 부 보건소에 문의 바랍니다. (2페이지 참조)
담 당 과	부 보건소복지실, 보건복지부 생활복지실 (모자·부자 지원담당) (tel 075-414-4585)
비 고	매년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고등학생,고등전문학교 학생을 위한 제도]

통칭(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

사 업 명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 지급사업
사업주체	교토부
취지·목적	교통사고에 의해 부모 등을 잃은 아동 혹은 학생에게 정신적·경제적 지원을 주어, 건전한 육성을 꾀함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부내(교토시 포함)에 거주하는, 교통사고에 의해 부모 등을 잃은 고등학생 등
지 급 액	장학금 64,000엔 (연액) 고등학교 입학 준비금 35,000엔
신청시기	5월 말일(이후는 수시접수(단,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청서류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 지급신청서
지급시기	7월 말일 (6월 이후 신청한 경우는 신청월의 다음달 말일)
병행지급	모자가정장학금,고등학교장학금등 또는 고등학교등 수학자금등과의 병행지급은 불가
접 수 처	부 교통대책과·부 광역진흥국
담 당 과	기획환경부 교통대책과(tel 075-414-4367)
비 고	

[사립고등 전수 학교생을 위한 제도]

통칭(사립고등전수학교생 장학보조금)

사 업 명	사립고등 전수 학교생 장학 보조금
사업주체	교토부
취지・목적	사립고등 전수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장학과 보호자의 교육비 부담의 경감을 꾀함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이하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는 자 1. 교토부내 사립고등전수학교 (수업년도가 3년 이상의 고등과정)에 해당하는 년도의 10월1일 현재 재적하는 자 2. 학비 부담자가 교토부내에 이주하여 과세 총소득액이 7,100천엔(711만엔) 이하인 자
지 급 액	연간 18,000엔
신청시기	9월-10월경
신청서류	신청서,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지급시기	12월경
병행지급	
접 수 처	사립고등학 전수학교
담 당 과	총무부 문교과(tel 075-414-4520)
비 고	

[고등학생을 위한 제도]

통칭(정시제 또는 통신제과정 교과서 무상급여)

사 업 명	교토부립고등학교 정시제과정 교과서 또는 통신제과정 교과서 학습서 급여(보조)사업
사업주체	교토부 교육위원회
취지·목적	근로 청소년의 고등학교 정시제과정 또는 통신제과정의 수학을 촉진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한다
대여·지급	급여
대 상 자	이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1. 부립고등학교의 정시제과정 또는 통신제과정에 재학하는 직업학생 중 급여(보조)를 희망하는 자 2. 직업학생외의 학생으로서, 구직중 건강상의 문제로 취업이 곤란하며 급여(보조)를 희망하는 자
지 급 액	교과서(통신제과정은 학습서 포함)을 무상으로 급여
신청시기	4월(연도 도중부터 대상에 포함된 경우 그 때마다)
신청서류	신청서, 조건해당증명서
지급시기	4월 (연도 도중부터 대상에 포함된 자는 원칙적으로 9월 또는 3월에 보조금 지급)
병행지급	제한 없음
접 수 처	각 정시제·통신제과정 설치 부립고등학교
담 당 과	교육청 지도부 고교교육과(tel 075-414-5849)
비 고	

[고등학생을 위한 제도]

통칭(정시제 또는 통신제과정 수학 장려금)

사 업 명	교토부립 고등학교 정시제과정 또는 통신제과정 수학 장려금 대여 사업			
사업주체	교토부교육위원회(공립고등학교),교토부(사립고등학교)			
취지・목적	근로청소년의 고등학교정시제과정 또는 통신제과정의 수학을 촉진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대여・지급	대여(무이자)			
대 상 자	부내의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정시제과정 또는 통신제과정,부내에 주소를 재적하며 타 부현(府県)의 광역통신제과정을 배우는 학생으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1. 경제적인 이유로 수학이 곤란한 자 2. 경제적 수입을 얻기 위한 직업학생 또는 그에 해당하는 자 3.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않는 자			
지 급 액	학년(차) \ 과정		정시제과정	통신제과정
	1-4년(차)	공립	14,000엔/월	14,000엔/월
		사립	29,000엔/월	14,000엔/월
신청시기	원칙적으로 4월-7월(연도 도중부터 대상에 포함된 경우 그 때마다)			
신청서류	신청서,학교장의 추천서,소득에 관한 증명서,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지급자격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신청자가 미성년인 경우)			
지급시기	원칙적으로 7월,11월,3월에 해당월분까지 대여			
연대보증인	2명			
병행지급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과 병행불과			
반제기간	대여의 취소등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경과 후 일시불 또는 대여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내			
반환면제	고등학교의 정시제과정 또는 통신제과정을 졸업 했을 경우			
접 수 처	각정시제,통신제과정설치고등학교			
담 당 과	공립고등학교: 교육청 지도부 고교교육과(tel 075-414-5849) 사립고등학교: 총무부문교과(tel 05-414-4520)			
비 고	고등학교 재학중은 반환이 연기 됩니다			

[고등학생,고등전문학교생을 위한 제도]

통칭(모자복지 자금 대부금)

사 업 명	모자복지 자금 대부금							
사업주체	교토부							
취지・목적	모자가정 아동의 수학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수학을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의 복지를 증진한다.							
대여・지급	대부							
대 상 자	교토부(교토시 제외)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로서 현재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자							
대 여 액	수학자금(무이자 대부) 단위 엔							
	학년별(월액) 학교등 종별			1년	2년	3년	4년	5년
	고등학교 전수학교 (고등과 정)	국공립	자택 통학	18,000 이내	18,000 이내	18,000 이내		
			자택외통학	23,000 이내	23,000 이내	23,000 이내		
		사립	자택통학	30,000 이내	30,000 이내	30,000 이내		
			자택외통학	35,000 이내	35,000 이내	35,000 이내		
	고등전문 학교	국공립	자택통학	21,000 이내	21,000 이내	21,000 이내	44,000 이내	44,000 이내
			자택외통학	22,500 이내	22,500 이내	22,500 이내	50,000 이내	50,000 이내
		사립	자택통학	32,000 이내	32,000 이내	32,000 이내	52,000 이내	52,000 이내
			자택외통학	35,000 이내	35,000 이내	35,000 이내	59,000 이내	59,000 이내
	취학 준비 자금							

	고등학교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고등과 정)에 입학	국공립	자택 통학 75,000 엔 이내(무이자 대부)
			자택외 통학 85,000엔 이내(무이자 대부)
			자택 통학 410,000엔 이내(무이자 대부)
		사립	자택외 통학 420,000엔 이내(무이자 대부)
신청시기	대부에 관한 상담은 진로를 검토하는 시기(9월)부터 접수 받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부 보건소복지실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신청서 · 호적등본 혹은 호적기재사항증명서 · 세대전원의 주민표 · 소득(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 취학통지서 등 입학할 증명하는 서류 등		
대부개시	대출 결정 · 차용서 제출 후		
연대보증인	필요		
병행 지급	독립행정법인일본학생지원기구장려금 또는 생활복지자금(수학자금),고등학생등수학지원사업과의 병행불가		
반 제	졸업 후 6개월의 거치기간 후		
접 수 처 문 의 처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역의 부 보건소에 문의 바랍니다.(2페이지 참조)		
담 당 과	부 보건소복지실 · 보건복지부 생활복지실(모자 · 부자 지원 담당) (tel 075-414-4585)		
비 고			

[고등학생,고등전문학교생을 위한 제도]

통칭(생활복지 자금 대부금(수학자금))

사 업 명	생활복지 자금 대부 사업				
사업주체	사회복지법인교토부사회복지협의회				
취지・목적	저소득세대를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부와 필요에 의한 원조지도가 경제적자립 , 생활 의욕의 성장촉진 ,주택복지 또는 사회참가의 촉진을 꾀함으로 안정된 생활을 지원한 다.				
대여・지급	대부				
대 상 자	저소득 세대(생활보호 기준의 1.8배 이내의 소득수준의 세대)				
지 급 액				자택	자택 외
	수학비	고등학교	국공립	18,000엔/월 이내	23,000엔/월 이내
			사립	30,000엔/월 이내	35,000엔/월 이내
		고등전문	국공립	21,000엔/월 이내	22,500엔/월 이내
			사립	32,000엔/월 이내	35,000엔/월 이내
	취학준비금	학교종류등 관계 없이 500,000엔 이내			
주1 고등학교에는 전수학교 고교과정을 포함 주2 수학급의 대부액은 1학년의 월액					
신청시기	수학비: 수시 취학준비금: 시정촌(市町村)사회복지협의회의 신청서접수일이 해당년 4월말까지인 것				
신청서류	차입신청서,민생의원조사서,소득증명서,재학증명서,합격통지서 복사 한것,필요경비견적서				
지급시기	대부 결정 된후 신용서등 제출후 (6개월분씩)				
연대보증인	원칙적으로 1명 이상(단,수학자가 차수인으로써 생계중심자가 연대차수인이 될 경우에는 생략할수 있다)				
병행지급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등 다른 장학금제도를 우선 하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으로 빌릴수 있다. 단, 고등학생 등 수학지원사업 등 다른 장학금제도의 대부를 못받았을 경우에는 대부를 지속 할수 있다.				
변제기간	졸업 후 6개월이내의 거치기간후 ,대부기간의 2배 이내의 기간 취학준비금은 졸업 후 6개월 이내 거치기간후 8년 이내의 기간				

접수처	시구청촌(市区町村)사회복지협의회(민생의원)
담당과	보건복지부 생활복지실(생활보호의료 담당)(tel 075-414-4558)

[고등학생을 위한 제도]

통칭(고등학생 수학지원 사업(수학금))

사 업 명	고등학생 등 수학지원 사업(수학금)	
	고등학교 등 수학금 대여제도	수학지원 특별융자이자 보급제도
사업주체	교토부	
취지·목적	면학 의욕이 있으나, 경제적 이유로 수학이 곤란한 고등학생에 대하여 수학금의 대여 등에 의해 교육의 기회균등을 꾀한다.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육성에 목적을 둔다	
대여·지급	대여(무이자)	이자보급
대 상 자	○고등학교,고등전문학교,중등교육학교(후기과정),특별지원학교(고등부),전수학교(고등과정)의 학생 ○ 생활보호기준의 1.5배 이하	○고등학교,중등교육학교(후기과정),특별지원학교(고등부),전수학교(고등과정) 학생의 보호자 ○좌기 기준을 넘는 세대는 주요 생계유지자의 연수가 구 일본육영회소득기준이하
지 급 액	국공립 월액 18,000엔 이내 사립 월액 30,000엔 이내 *자택외는 5,000엔 가산	[금융기관의 융자 한도액] 국공립 일시불 648,000엔 이내 분할 각년도 216,000엔 이내 사립 일시불 1,080,000엔 이내 분할 각년도 360,000엔 이내
신청시기	중학교 3학년 예약 신입학생(예약하지 않고 있는 분)	9월-12월 (재학하고 있는 4월-5월 중순 학교에 신청)
	수시접수(신청일의 다음달분부터 대여)	5월- *부(府)로부터 융자신청자격인정증을 교부 *금융기관에 융자신청 다음 년도 6월 부(府)에 이자보급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소득에 관한 증명서	신청서,소득에 관한 증명서 (금융기관에 융자신청시에는, 부발행의 융자신청자격인정증 등이 필요)
지급시기	4월(4월분-8월분) 9월(9월분-12월분) 1월(1월분-3월분)	*융자기관에서 융자 일시불 입학년도 5월- 분할 신청년도의 5월-또는 다음년도 이후 4월

		*부(府)로부터 이자보급 신청년도의 8월
연대보증인	1명	연대보증인은 불 필요하나,보증(수수)료자기부담
반제기간	대여종료후,20년 이내(반환연기의 경우 연기 종료후 20년 이내)	최초 용자의 다음 달부터 최장 7년 이내(3 년 이내의 원금거치도 가능)
병행지급	특별지원학교의 취학 장려금,모자 또는 과부복지자금 수학자금등 나라,부(府)가 대여 또는 지급하는 장학금과의 병합 불가	
담 당 과	교육청지도부 고등학교교육과(tel 075-414-5856) 총무부문교과(tel 075-414-4518)	
비 고		

[고등학생을 위한 제도]

통칭(고등학생 수학지원 사업(수학 준비금))

사 업 명	고등학생 등 수학지원 사업(수학 준비금)	
	고등학교 등 수학 준비금 대여제도	수학 준비금 지원특별 용자이자 보급제도
사업주체	교토부	
취지·목적	면학의욕이 있으나, 경제적 이유로 수학이 곤란한 고등학생에 대하여 수학금의 대여 등에 의해 교육의 기회 균등을 꾀한다.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육성에 목적을 둔다	
대여·지급	대여(무이자)	이자보급
대 상 자	○고등학교,고등전문학교,중등교육학교(후기과정),특별지원학교(고등부),전수학교(고등과정)의 학생 ○고등학교등 수학금대여자 ○주요 생계유지자의 연간수입이 150만 미만인 자	○좌측의 보호자 ○좌측의 보호자 ○주요 생계유지자의 연간수입이 150만엔 이상
지 급 액	국공립 월정액 50.000엔 사립 월정액 250.000엔	[용자액] 좌측과 동일 함
신청시기	중학교 3학년 예약 9월-12월 (재학하고 있는 신입학생(예약하지 않고 있는 분)4월-5월 중순 학교에 신청)	
		4월-6월 *부(府)로부터 용자신청자격인정 증을 교부 *금융기관에 용자신청 다음년도 6월 부(府)에 이자보급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	신청서 (금융기관에 용자 신청시에는, 부발행의 용 자신청자격인정증 등이 필요)
지급시기	4월(4월분- 8월분) 9월(9월분-12월분) 1월(1월분- 3월분)	*용자기관에서 용자 4월 중순-6월 중순 *부(府)로부터 이자보급 신청년도의 8월
연대보증인	1명	연대보증인은 불 필요하나,보증(수수)료자 기부담
반제기간	대여종료후 20년 이내(반환 연기의 경	용자의 다음 달부터 최장 7년 이내(3년 이

	우 연기종료후 20년 이내)	내의 원금거치도 가능)
병행지급	특별지원 학교의 취학 장려금,모자 또는 과부복지자금 수확자금등 나라,부(府)가 대여 또는 지급하는 장학금과의 병합 불가	
담당과	교육청지도부 고등학교교육과(tel 075-414-5856) 총무부문교과(tel 075-414-4518)	
비고		

[고등전문학교생을 위한 제도]

통칭(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사 업 명	제1종 장학금					
사업주체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취지·목적	우수한 학생이 경제적 이유로 인해 수학의 곤란이 있을 경우 학자금의 대여 등을 행하는 것으로 유능인재 육성을 도모하며 교육 기회의 균등에도 기여한다					
대여·지급	대여(무이자)					
대 상 자	고등전문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교장의 추천에 의해 채용된 자					
지 급 액	무이자 대여 장학금(제1종)					
	월액 (단위:엔)					
	입학 년도	년차	국·공립		사 립	
			자택	자택 외	자택	자택 외
	19	1	21,000	22,500	32,000	35,000
	18	2	21,000	22,500	32,000	35,000
	17	3	21,000	22,500	32,000	35,000
	16	4	21,000	22,500	32,000	35,000
	15	5	45,000	51,000	53,000	60,000
신청시기	예약채용: 진학하는 전년도 10월 경 재학채용: 4월 경					
신청서류	신청서,소득증명서 등					
지급시기	매월					
연대보증인	1명					
반제기간	대여총액에 의거해 결정 (15년이내)					
접 수 처	예약채용:재학하고 있는 중학교					

	재학채용: 재학하고 있는 고등전문학교
비 고	문의처: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장학사업 상담 센터 (tel 0570-03-7240(나비다이얼))

제6편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제도

명 칭	대여·지급	대 상 자	접 수 처	페이지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취직준비금	지급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피보호 세대의 자녀	부 보건소, 각 시 복지사무소	68
기능취득자금·입소준비금	지급	교토부의 구역(교토시의 구역 제외)에 거주하는 세대 중, 경제적 이유에 의해 기능취득이 곤란한 세대의 자녀(만 20세에 달하는 날 이후부터 3월31일까지 시설에 입소하는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 계속해서 기능취득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 1 생활보호수급 세대의 자녀 2 경제적 이유에 의해 기능 취득이 곤란한 세대의 자녀(소속 세대의 총수입이 생활보호기준의 1.8배 이내)	부 보건소 부 광역진흥국	69
직업훈련지원제도	지급	공공직업 안정소의 수강지시에 의해 공공직업 능력개발 시설에서 훈련을 받는 자	공공직업 능력 개발 시설	71
장애자 등 직장적응 훈련수당	지급	공공직업 안정소장이 훈련 받는 것을 지시한 장애자 등으로서 취직이 곤란한 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공직업 안정소	72
기능자 육성자금	대부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에 입교한 자로서, 경제적 이유에 의해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곤란한 자(훈련수당 수급자는 제외)	공공직업능력개발 시설	73
모자복지자금 대부금	대부	교토부(교토시 제외)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로서 현재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자	부 보건소	74
생활복지자금대여금(수학자금)	대부	저소득 세대(생활보호기준의 1.8배 이내의 소득수준의 세대)	시구청촌(市区町村) 사회복지협의회(민생의원)	76
독립행정법인 일본학	대여(무이자)	학교교육법에 의한 단기대학,대학(학부),대학원,전수학교(전문과정)에 재학하는 학생으로,교	예약채용: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등	77

생지원기구 장학금 (제1종)		장의 추천에 의해 채용된 자	재학채용: 재학하고 있는 대학, 단기대 학,전수학교(전문과 정)등	
독립행정법 인 일본학 생지원기구 장 장학금(제 2종)	대여(무이자)	학교교육법에 의한 고등전문학교,단기대학, 대 학(학부), 대학원, 전수학교(전문과정)에 재학 하는 학생으로,교장의 추천에 의해 채용된 자	예약채용: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등 재학채용: 재학하고 있는 대학, 단기대 학,전수학교(전문과 정)등	79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제도]

통칭(생활보호법에 의거한 취직 준비금)

사 업 명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취직준비금			
사업주체	교토부・시			
취지・목적	취직이 확정된 경우 준비금(의류, 신발구입비)을 지급하는 것으로 세대의 자립갱생을 꾀함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피보호자 세대의 자녀			
지 급 액	<table><tr><td>취직준비금</td><td>28,000엔 이내</td></tr></table>		취직준비금	28,000엔 이내
취직준비금	28,000엔 이내			
신청시기	각 복지사무소 등이 설정			
신청서류	각 복지사무소 등이 정하는 양식			
지급시기	각 복지사무소 등이 설정			
접 수 처 문 의 처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역의 부 보건소(2페이지 참조), 각 시 복지사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담 당 과	보건복지부 생활복지실(생활보호의료 담당) (tel 075-414-4557・4558)			
비 고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제도]

통칭(기능취득자금·입소 준비금)

사 업 명	기능취득지원 사업														
사업주체	교토부														
취지・목적	경제적 이유에 의해 기능 습득이 곤란한 자에 대해, 기능취득자금을 지급 함으로써 세대의 자립갱생을 꾀함.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교토부의 구역(교토시의 구역 제외)에 거주하는 세대 중, 경제적 이유에 의해 기능취득이 곤란한 세대의 자녀(만 20세에 달하는 날 이후부터 3월31일까지 시설에 입소하는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 계속해서 기능취득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로서, 하기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 1 생활보호수급 세대의 자녀 2 경제적 이유에 의해 기능취득이 곤란한 세대의 자녀(소속 세대의 총수입이 생활보호기준의 1.8배 이내)														
지 급 액	<table><tr><th>시설의 종류</th><th>기능취득자금</th><th>입소준비금</th></tr><tr><td>공공직업 능력개발 시설 (부립교토고등기술전문학교)</td><td>5,000엔/월</td><td rowspan="4">55,000엔</td></tr><tr><td>간호학교(간호전문학교 등)</td><td>13,000엔/월</td></tr><tr><td>고교형태(나라고등전수학교 등)</td><td>21,000엔/월</td></tr><tr><td>실기학교(각종 전문학교・전수학교 등)</td><td>24,000엔/월</td></tr></table>			시설의 종류	기능취득자금	입소준비금	공공직업 능력개발 시설 (부립교토고등기술전문학교)	5,000엔/월	55,000엔	간호학교(간호전문학교 등)	13,000엔/월	고교형태(나라고등전수학교 등)	21,000엔/월	실기학교(각종 전문학교・전수학교 등)	24,000엔/월
시설의 종류	기능취득자금	입소준비금													
공공직업 능력개발 시설 (부립교토고등기술전문학교)	5,000엔/월	55,000엔													
간호학교(간호전문학교 등)	13,000엔/월														
고교형태(나라고등전수학교 등)	21,000엔/월														
실기학교(각종 전문학교・전수학교 등)	24,000엔/월														
신청시기	・1차신청 : 3월 중순 ・2차신청 : 4월 중순(이후는 수시접수)														
신청서류	신청서, 재학(재적)증명서, 수입상황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등														
지급시기	・제1기분 : 4월 하순(1차 신청분) 5월 하순(2차 신청분) ・제2기분 : 8월 ・제3기분 : 12월														

	※1 2차신청 이후의 수시접수분에 관해서는 그 때마다 지급 ※2 입소준비금은 4월 혹은 5월에 전액 지급
병행지급	타 유사급부 등을 받는 경우는 지급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음.
접 수 처 문 의 처	상세한 내용은 지역의 부 보건소(2페이지 참조),부 광역진흥국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담 당 과	보건복지부 생활복지실(생활보호의료 담당)(tel 075-414-4557,4558)
비 고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제도]

통칭(직업훈련 지원 제도)

사 업 명	직업훈련 준비금
사업주체	교토부・국
취지・목적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의 직업훈련을 받는 모자가정의 어머니, 중국귀국자 등에 대해, 훈련기간중의 생활지원을 피하기 위해, 훈련수당을 지급함.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공공직업 안정소의 수강지시에 의해 공공직업 능력개발 시설에서 훈련을 받는 자
지 급 액	기본 수당 1일 3,530엔 기능습득 수당 수강 수당 1일 500엔, 통근 수당 월액(한도액) 42,500엔
신청시기	입학시
신청서류	훈련수당 등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직업훈련수강지시서
지급시기	다음 달 15일
접 수 처	공공직업 능력개발 시설
담 당 과	부민노동부 능력개발과 (tel 075-414-5105)
비 고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제도]

통칭(장애자 등 직장적응훈련 수당)

사 업 명	장애자 등 직장적응훈련
사업주체	교토부
취지・목적	취직이 곤란한 장애자 등을 대상으로, 사무소에서 해당 사무소의 업무에 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작업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촉진함.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공공직업 안정소장이 훈련 받는 것을 지시한 장애자 등으로서 취직이 곤란한 자
지 급 액	기본 수당 1일 3,530엔 기능습득 수당 수강 수당 1일 500엔 통근 수당 월액(한도액) 42,500엔
신청시기	수시(공공직업 안정소에서 사업주와 관계를 맺는다)
신청서류	직장적응훈련수강신청서(통소서)
지급시기	일반직장적응훈련은 1력월 종료 후, 단기직장적응훈련은 훈련종료 후의 직장적응훈련 실시상황보고서의 제출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병행지급	없음
접 수 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공직업 안정소
담 당 과	부민노동부 능력개발과 (tel 075-414-5105)
비 고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제도]

통칭(기능자 육성 자금)

사 업 명	기능자 육성 자금
사업주체	독립행정법인 고용·능력개발기구
취지·목적	우수한 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6개월 이상 공공직업 능력개발 시설의 시설내 훈련을 받는 자 중, 경제적 이유에 의해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곤란한 자에 대해서 대부를 행함.
대여·지급	대여
대 상 자	공공직업 능력개발 시설에 입교한 자로서, 경제적 이유에 의해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곤란한 자(훈련 수당 수급자를 제외)
대 여 액	월액 22,100엔 ~ 26,100엔
신청시기	입교시
신청서류	육성자금대출신청서, 소득증명서 등
지불시기	매월
연대보증인	성인 노동자
반제기간	16년 이내
접 수 처	공공직업 능력개발 시설
담 당 과	부민노동부 능력개발과(tel 075-414-5105)
비 고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제도]

통칭(모자복지자금 대부금) - 1

사 업 명	모자복지자금 대부금						
사업주체	교토부						
취지・목적	모자가정 아동의 수학,수업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수학을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의 복지를 증진한다.						
대여・지급	대부						
대 상 자	교토부(교토시 제외)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로서 현재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자						
대 여 액	수학자금(무이자 대부) 단위 엔						
	학년별(월정액) 학교등 종별			1년	2년	3년	4년
	단기대학 전수학교 (전문과 정)	국공립	자택통학	45,000 이내	45,000 이내		
			자택외통학	51,000 이내	51,000 이내		
		사 립	자택통학	53,000 이내	53,000 이내		
			자택외통학	60,000 이내	60,000 이내		
	대 학	국공립	자택통학	45,000 이내	45,000 이내	44,000 이내	44,000 이내
			자택외통학	51,000 이내	51,000 이내	50,000 이내	50,000 이내
		사 립	자택통학	54,000 이내	54,000 이내	53,000 이내	53,000 이내
			자택외통학	64,000 이내	64,000 이내	63,000 이내	63,000 이내
	취학준비 자금(무이자 대부)						
	대학 단기대학 전수학교(전문과 정)에입학	국공립	자택통학	370,000 엔 이내(무이자 대부)			
			자택외통학	380,000엔 이내(무이자 대부)			
		사 립	자택통학	580,000엔 이내(무이자 대부)			
			자택외통학	590,000엔 이내(무이자 대부)			
	수업시설에 입소		자택통학	90,000엔 이내(무이자 대부)			
			자택외통학	100,000엔 이내(무이자 대부)			
	수업자금			월	50,000엔 이내(무이자 대부)		
	취직준비 자금			한번에	100,000엔 이내(무이자 대부)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제도]

통칭(모자복지자금 대부금) - 2

대부상담시기	대부에 관한 상담은 진로를 검토하는 시기(8월)부터 접수 받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부 보건소복지실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신청서 · 호적등본 혹은 호적기재사항증명서 · 세대전원의 주민표 · 소득(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등
대부개시	대출 결정, 차용서등 제출 후
연대보증인	필요
병행 지급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려금 또는 생활복지자금 병행불가
반 제	수학자금 졸업 후 6개월의 거치기간 후 취학준비자금 졸업 후 6개월의 거치기간 후 수업자금 지식기술습득 후 6개월의 거치기간 후 취직준비자금 대부일부터 1년의 거치기간 후
접 수 처 문 의 처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역의 부 보건소에 문의 바랍니다.(2페이지 참조)
담 당 과	부 보건소복지실, 보건복지부 생활복지실(모자 · 부자지원 담당) (tel 075-414-4585)
비 고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제도]

통칭(생활복지자금 대부금(수학자금))

사 업 명	생활복지자금 대부 사업				
사업주체	사회복지법인 교토부사회복지협의회				
취지・목적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부와 필요에 의한 원조지도가 경제적자립 , 생활의욕의 성장촉진 ,주택복지 또는 사회참가의 촉진을 꾀함으로 안정된 생활을 지원한다.				
대여・지급	대부				
대 상 자	저소득 세대(생활보호기준의 1.8배 이내의 소득수준의 세대)				
대 여 액				자 택	자택 외
	수학비	단기대학	국공립	45,000엔/월 이내	51,000엔/월 이내
			사 립	53,000엔/월 이내	60,000엔/월 이내
		대 학	국공립	45,000엔/월 이내	51,000엔/월 이내
			사 립	54,000엔/월 이내	64,000엔/월 이내
	취학 준비금	학교종류등 관계없이 500,000엔 이내			
주1 단기대학에는 전수학교전문과정을 포함 주2 수학금의 대부액은 1학년의 월액					
신청시기	수학비: 수시 취학준비금: 시정촌(市町村)사회복지협의회의 신청서접수일이 해당년 4월말까지인 것				
신청서류	차입신청서,민생의원조사서,소득증명서,재학증명서,합격통지서 복사 한 것,필요경비견적서				
지급시기	대부 결정 된후 신용서등 제출후 (6개월분씩)				
연대보증인	원칙적으로 1명 이상(단,수학자가 차수인으로써 생계중심자가 연대차수인이 될 경우에는 생략할수 있다)				
병행지급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등 다른 장학금제도를 우선하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으로 빌릴수 있다. 단,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등 다른 장학금제도의 대부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대부를 지속할수 있다.				
반제기간	졸업 후 6개월 이내 거치기간후 ,대부기간의 2배 이내의 기간 취학준비금은 졸업 후 6개월 이내 거치기간후 8년 이내의 기간				

접 수 처	시구청촌(市区町村)사회복지협의회(민생의원)
담 당 과	보건복지부 생활복지실(생활보호의료 담당)(tel 075-414-4557,4558)
비 고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제도]

통칭(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제1종])

사 업 명	제1종 장학금																																																																																						
사업주체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취지・목적	우수한 학생이 경제적 이유로 인해 수학의 곤란이 있을 경우 학자금의 대여등을 행하는 것으로 유능인재 육성을 도모하며 교육기회의 균등에도 기여한다																																																																																						
대여・지급	대여(무이자)																																																																																						
대 상 자	학교교육법에 의한 단기대학,대학(학부),대학원,전수학교 (전문과정)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교장의 추천에 의해 채용된 자																																																																																						
지 급 액	<table><tr><td colspan="5">무이자 대여 장학금(제1종)</td><td colspan="2">월정액 (단위: 엔)</td></tr><tr><td rowspan="2">구 분</td><td rowspan="2">입학년도</td><td rowspan="2">연차</td><td colspan="2">국공립</td><td colspan="2">사립</td></tr><tr><td>자택</td><td>자택외</td><td>자택</td><td>자택외</td></tr><tr><td rowspan="3">단기대학</td><td>19</td><td>1</td><td>45,000</td><td>51,000</td><td>53,000</td><td>60,000</td></tr><tr><td>18</td><td>2</td><td>45,000</td><td>51,000</td><td>53,000</td><td>60,000</td></tr><tr><td>17</td><td>3</td><td>45,000</td><td>51,000</td><td>53,000</td><td>60,000</td></tr><tr><td rowspan="7">대 학</td><td>19</td><td>1</td><td>45,000</td><td>51,000</td><td>54,000</td><td>64,000</td></tr><tr><td>18</td><td>2</td><td>45,000</td><td>51,000</td><td>54,000</td><td>64,000</td></tr><tr><td>17</td><td>3</td><td>45,000</td><td>51,000</td><td>54,000</td><td>64,000</td></tr><tr><td>16</td><td>4</td><td>44,000</td><td>50,000</td><td>53,000</td><td>63,000</td></tr><tr><td>15</td><td>5</td><td>44,000</td><td>50,000</td><td>53,000</td><td>63,000</td></tr><tr><td>14</td><td>6</td><td>44,000</td><td>50,000</td><td>53,000</td><td>63,000</td></tr><tr><td colspan="6">대학통신교육(-면접수업시간)88.000</td></tr></table>							무이자 대여 장학금(제1종)					월정액 (단위: 엔)		구 분	입학년도	연차	국공립		사립		자택	자택외	자택	자택외	단기대학	19	1	45,000	51,000	53,000	60,000	18	2	45,000	51,000	53,000	60,000	17	3	45,000	51,000	53,000	60,000	대 학	19	1	45,000	51,000	54,000	64,000	18	2	45,000	51,000	54,000	64,000	17	3	45,000	51,000	54,000	64,000	16	4	44,000	50,000	53,000	63,000	15	5	44,000	50,000	53,000	63,000	14	6	44,000	50,000	53,000	63,000	대학통신교육(-면접수업시간)88.000					
	무이자 대여 장학금(제1종)					월정액 (단위: 엔)																																																																																	
	구 분	입학년도	연차	국공립		사립																																																																																	
				자택	자택외	자택	자택외																																																																																
	단기대학	19	1	45,000	51,000	53,000	60,000																																																																																
		18	2	45,000	51,000	53,000	60,000																																																																																
		17	3	45,000	51,000	53,000	60,000																																																																																
	대 학	19	1	45,000	51,000	54,000	64,000																																																																																
		18	2	45,000	51,000	54,000	64,000																																																																																
		17	3	45,000	51,000	54,000	64,000																																																																																
		16	4	44,000	50,000	53,000	63,000																																																																																
		15	5	44,000	50,000	53,000	63,000																																																																																
		14	6	44,000	50,000	53,000	63,000																																																																																
대학통신교육(-면접수업시간)88.000																																																																																							
* (주)1 대학원,전수학교(전문과정)는 별도의 기준 있음																																																																																							
(주)2 단기대학,대학,대학원,전수학교(전문과정)제1학년입학자로서,제1종장학금의 대부를 받고있는 자는 필요조건을 채웠을 때 입학시 특별 장려금(30만엔)의 증가액대부를 받을수 있다(유이자)																																																																																							

신청시기	예약채용: 진학하는 전년도당초로서 각 학교에서 정한 기일 재학채용: 4월경						
신청서류	신청서,소득증명서 등						

지급시기	매월
연대보증인	1명(반환계약서제출시는 보증인을 포함하여 2명. 또한, 보증료를 지불함으로서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을수 있는 기관보증제도도 있습니다.인적보증제도와 기관보증제도는 신청자에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제기간	대여총액에 의거해 결정(20년 이내)
접 수 처	예약채용: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등 재학채용: 재학하고 있는 대학,단기대학,전수학교(전문과정) 등
담 당 과	
비 고	문의처: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장학사업 상담 센터 (tel 0570-03-7240(나비다이얼))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제도]

통칭(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제2종])

사 업 명	제2종 장학금																		
사업주체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취지·목적	우수한 학생이 경제적 이유로 인해 수학의 곤란이 있을 경우 학자금의 대여등을 행하는 것으로 유능인재 육성을 도모하며 교육기회의 균등에도 기여한다																		
대여·지급	대여(유이자)																		
대 상 자	학교교육법에 의한 고등전문학교,단기대학,대학(학부)대학원,전수학교(전문과정)에 재학하는 학생으로,교장의 추천에 의해 채용된 자																		
대 여 액	<table border="1"> <thead> <tr> <th>학 종</th><th>대여월정액</th></tr> </thead> <tbody> <tr> <td>고등전문학교(4,5년)</td><td>3만엔</td></tr> <tr> <td>단기대학</td><td>5만엔</td></tr> <tr> <td>대학</td><td>8만엔 부터 선택</td></tr> <tr> <td>전수학교(전문과정)</td><td>10만엔</td></tr> <tr> <td>대학원</td><td>5만엔</td></tr> <tr> <td></td><td>8만엔</td></tr> <tr> <td></td><td>10만엔 부터 선택</td></tr> <tr> <td></td><td>13만엔</td></tr> </tbody> </table> * (주)1 사립의대,치대,약대,수의대에 대해서는 10만엔 선택자에 한하여 증액이 가능 (의대,치대는 4만엔,약대,수의대는 2만엔) 또한, 법과대학에 대해서는 13만엔 선택자에 한하여 4만엔 또는 7만엔 증액이 가능 (주)2 단기대학,대학,대학원,전수학원(전문과정)제1학년 입학자로서,제2종 장학금의 대부를 받고있는 자는 필요조건을 채웠을 때 입학시 특별 장려금(30만엔)의 증가액대부를 받을수 있다	학 종	대여월정액	고등전문학교(4,5년)	3만엔	단기대학	5만엔	대학	8만엔 부터 선택	전수학교(전문과정)	10만엔	대학원	5만엔		8만엔		10만엔 부터 선택		13만엔
학 종	대여월정액																		
고등전문학교(4,5년)	3만엔																		
단기대학	5만엔																		
대학	8만엔 부터 선택																		
전수학교(전문과정)	10만엔																		
대학원	5만엔																		
	8만엔																		
	10만엔 부터 선택																		
	13만엔																		
신청시기	예약채용: 진학하는 전년도 당초 각 학교에서 정한 기일 재학채용: 4월 경																		
신청서류	신청서,소득증명서 등																		
지급시기	매월																		

연대보증인	1명(반환계약서제출시는 보증인을 포함하여 2명. 또한, 보증료를 지불함으로서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을수 있는 기관보증제도도 있습니다.인적보증제도와 기관보증제도는 신청자에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제기간	대여총액에 의거해 결정(20년 이내)
접 수 처	예약채용: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등 재학채용: 재학하고 있는 대학,단기대학,전수학교(전문과정) 등
담 당 과	
비 고	문의처: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사업 상담 센터 (tel 0570-03-7240(나비다이얼))

제7편 특별지원학교 아동,학생을 위한 제도

명 칭	대여·지급	대 상 자	접 수 처	페이지
취학장려금	지급	특별지원 학교에 재적하는 아동 학생	특별지원학교	82
고등학생 등 수학지 원사업(수 학금)	대여(무이자)	① 고등학교, 고등전수학교, 중등교육학교(후기 과정) 특별지원학교(고등부) 전수학교(고등 과정)의 학생 ② 생활보호기준의 1.5배 이하	부 교육청지휘부 고교교육과 부 총 무부문교과	85
	이자보급	①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후기과정), 특별지원 학교(고등부), 전수학교(고등과정) 학생의 보 호자 ② 상기②기준을 넘는 세대의 주요 생계유지 자의 연간수입이 구일본육영회소득기준이 하		
고등학생 등 수학지 원사업(수 학준비금)	대여(무이자)	① 고등학교, 고등전문학교, 중등교육학교(후기 과정), 특별지원학교(고등부), 전수학교(고등 과정)의 학생 ② 고등학교 등 수학금대여자 ③ 주요생계유지자의 연간수입이 150만엔 미 만	부 교육청지휘부 고교교육과 부 총 무부문교과	87
	이자보급	① 상기①의 보호자 ② 상기②의 보호자 ③ 주요생계유지자의 연간수입이 150만엔 미 만		

[특별지원학교아동,학생을 위한 제도]

통칭(취학 장려금)

사 업 명	취학 장려금
사업주체	국,교토부
취지・목적	교육의 기회균등을 취지로 하여 특별지원학교에의 취학에 필요한 경비를 아동학생의 보호자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그 담당능력의 정도에 응하여 전부,또는 일부분을 지변한다.
대여・지급	지급
대 상 자	특별지원학교에 재적하는 아동학생
지 급 액	별지
신청시기	각 학교에 따라 다름
신청서류	수입액,수요액조서,소득증명서
지급시기	각 학교에 따라 다름
병행지급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하는 아동학생 또는 지정요육기관에 입원한 아동학생의 보호자 등으로 취학에 관계하는 조치비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함
접 수 처	특별지원학교
담 당 과	교육청지도부 특별지원교육과(tel 075-414-5835)
비 고	

(별지)

지급액 일람

교과용도서구입비(실비)			
고등부 I -Ⅲ단계		전액	
확대교재비(초,중학부)		1페이지 당 40엔을 한도로서 환산한 금액 (한권 당 10,000엔 이내)	
		[1단계]	[2단계]
학교급식비(실비)		전액	1/2의 금액
교통비(실비)			
통학비,부첨비			
귀성비(39왕복 분)			
귀성부첨비(78왕복 분)		전액	전액
직장실습비(중학부,고등부)			(고등부는 1/2의 금액)
교류학습비(유치부,초등,중학부 고등부(본과))			
기숙사주거에 따른 경비(실비)			
식비(초,중학부		154,880엔 이내	77,440엔 이내
고등부)		148,390엔 이내	74,195엔 이내
침구구입비		5,250엔 이내	2,625엔 이내
일용품등 구입비		134,490엔 이내	67,245엔 이내
수학여행비(실비)			
초등부	본인비	20,600엔 이내	10,300엔 이내
	부첨비	31,900엔 이내	15,950엔 이내
중학부	본인비	55,900엔 이내	27,950엔 이내
	부첨비	78,790엔 이내	39,395엔 이내
고등부(본과)	본인비	104,620엔 이내	52,310엔 이내
	부첨비	148,390엔 이내	74,195엔 이내
교외활동비(실비)			
유치부	본인비	1,510엔 이내	755엔 이내
초등부	부첨비	2,260엔 이내	1,130엔 이내
중학부	본인비	2,180엔 이내	1,090엔 이내

고등부(본과)	부첨비	3,290엔 이내	1,645엔 이내
숙박생활훈련비 (실비)			
초등부	본인비	17,480엔 이내	8,740엔 이내
	부첨비	26,220엔 이내	13,110엔 이내
중학부	본인비	23,210엔 이내	11,605엔 이내
	부첨비	34,810엔 이내	17,405엔 이내
고등부(본과)	본인비	23,350엔 이내	11,675엔 이내
	부첨비	35,030엔 이내	17,515엔 이내
직장실습숙박비(실비)			
고등부		7,170엔 이내	3,585엔 이내
학용품구입비(실비)			
유치부		8,280엔 이내	4,140엔 이내
초등부		11,190엔 이내	5,595엔 이내
중학부		21,930엔 이내	10,965엔 이내
고등부(본과)		30,810엔 이내	15,405엔 이내
통학용품구입비(실비)			
(신입학아동학생학용품비등 수급자 제외)			
유치원,초등부,중학부		2,170엔 이내	1,085엔 이내
고등부(본과)			
신입학아동학생학용품비등(실비)			
초등부		19,900엔 이내	9,950엔 이내
중학부		22,900엔 이내	11,450엔 이내
고등부(본과)		22,900엔 이내	11,450엔 이내
*금액은 헤이세이18년도 실적 입니다.			

[특별지원학교학생(고등부)을 위한 제도]

통칭(고등학생 등 수학지원 사업(수학금))

사 업 명	고등학생 등 수학지원사업(수학금)	
	고등학교 등 수학급대여제도	수학지원특별융자이자보급제도
사업주체	교토부	
취지·목적	면학 의욕이 있으나, 경제적 이유로 수학이 곤란한 고등학생에 대하여 수학금의 대여 등에 의해 교육의 기회 균등을 꾀한다.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육성에 목적을 둔다	
대여·지급	대여(무이자)	이자보급
대 상 자	○고등학교,고등전문학교,중등교육학교(후기과정),특별지원학교(고등부),전수학교(고등과정)의 학생 ○생활보호기준의 1.5배 이하	○고등학교,중등교육학교(후기과정),특별지원학교(고등부),전수학교(고등과정)의 학생의 보호자 ○좌기기준을 넘는 세대는 주요 생계유지자의 년수가 구 일본육영회소득기준이하
대 여 액	국공립 월액 18,000엔 이내 사립 월액 30,000엔 이내 *자택 외는 5,000엔 가산	[금융기관의 융자한도액] 국공립 일시불 648,000엔 이내 분할 각년도 216,000엔 이내 사립 일시불 1,080,000엔 이내 분할 각년도 360,000엔 이내
신청시기	중학교 3학년 예약 9월-12월 (재학하고 있는 신입학생(예약하지 않고 있는 분)4월-5월 중순 학교에 신청)	
	수시접수(신청일의 다음 달분부터 대여)	5월- *부(府)로부터 융자신청자격인정증을 교부 *금융기관에 융자신청 다음년도 6월 부(府)에 이자보급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소득에 관한 증명서	신청서,소득에 관한 증명서 (금융기관에 융자 신청시에는, 부 발행의 융자신청자격인정증 등이 필요)
지급시기	4월(4월분- 8월분) 9월(9월분-12월분)	*융자기관에서 융자 일시불 입학년도의 5월-

	1월(1월분- 3월분)	분할 신청년도의 5월-또는 다음 년도 이후 4월 *부(府)로부터 이자보급 신청년도의 8월
연대보증인	1명	연대보증인은 불 필요하나,보증(수수)료자 기부담
반제기간	대여종료후,20년 이내 (반환연기의 경우 연기종료후 20년이내)	최초 용자의 다음달부터 최장 7년 이내(3 년 이내의 원금거치도 가능)
병행지급	특별지원학교의 취학장려금,모자 또는 과부복지자금수학자금등 나라,부(府)가 대여 또 는 지급하는 장학금과의 병합 불가	
담 당 과	교육청지도부 고등학교교육과(tel 075-414-5856) 총무부문교과(tel 075-414-4518)	
비 고		

[특별지원학교학생(고등부)를 위한 제도

통칭(고등학생 수학지원 사업(수학 준비금))

사 업 명	고등학생등 수학지원 사업(수학금)	
	고등학교등 수학급대여제도	수학지원특별융자이자보급제도
사업주체	교토부	
취지・목적	면학 의욕이 있으나, 경제적 이유로 수학이 곤란한 고등학생에 대하여 수학금의 대여 등에 의해 교육의 기회균등을 꾀한다.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육성에 목적을 둔다	
대여・지급	대여(무이자)	이자보급
대 상 자	○고등학교,고등전문학교,중등교육학교(후기과정),특별지원학교(고등부),전수학교(고등과정)의 학생 ○고등학교등 수학급대여자 ○주요 생계유지자의 연간수입이 150만미만인 자	○좌측의 보호자 ○좌측의 보호자 ○주요 생계유지자의 연간수입이 150만엔 이상
대 여 액	국공립 월정액 50.000엔 사립 월정액 250.000엔	[융자액] 좌측과 동일 함
신청시기	중학교 3학년 예약 9월-12월 (재학하고 있는 신입학생(예약하지 않고 있는 분)4월-5월 중순 학교에 신청)	
		4월-6월 *부(府)로부터 융자신청자격인정 증을 교부 *금융기관에 융자신청 다음 년도 6월 부(府)에 이자보급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	신청서 (금융기관에 융자 신청시에는, 부발행의 융 자신청자격인정증 등이 필요)
지급시기	4월(4월분- 8월분) 9월(9월분-12월분) 1월(1월분- 3월분)	*융자기관에서 융자 4월 중순-6월 중순 *부(府)로부터 이자보급 신청년도의 8월
연대보증인	1명	연대보증인은 불 필요하나,보증(수수)료자

		기부담
반제기간	대여종료후,20년 이내 (반환연기의 경우 연기종료후 20년이내)	용자의 다음 달부터 7년 이내(3년 이내의 원금거치도 가능)
병행지급	특별지원학교의 취학장려금,모자 또는 과부복지자금 수학자금 등 나라,부(府)가 대여 또는 지급하는 장학금과의 병합 불가	
담 당 과	교육청지도부 고등학교교육과(tel 075-414-5856) 총무부문교과(tel 075-414-4518)	
비 고	헤이세이19년도 입학생에 적용	

